

제433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3월17일(화)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공소청법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54)
2.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28)
3. 공소청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7197)
4.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40)
5. 검찰청법 폐지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0)
6. 공소청법 제정에 관한 청원(박은정 의원 외 3인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283)

상정된 안건

1. 공소청법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54) 5
2.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28) 5
3. 공소청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7197) 5
4.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40) 5
5. 검찰청법 폐지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0) 5
6. 공소청법 제정에 관한 청원(박은정 의원 외 3인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283) ... 5

(14시27분 개의)

○소위원장 김용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78년간 이어 온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이라는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기관을 신설하는 날입니다. 오늘의 회의는 완전한 검찰개혁을 향해 또 한 걸음 내딛는 역사적인 순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7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습니다.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진 권력은 결국 12·3 내란이라는 국민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겨 주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빛의 혁명 시민들과 함께 국민주권정부를 탄생시켰고 마침내 무소불위 권력의 상징이던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진정한 검찰개혁은 곧 내란을 종식하는 과정입니다. 검찰개혁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흐름 앞에 추운 광장에서 응원봉을 들고 섰던 시민 한 분 한 분의 염원들을 기억하고 있습

니다. 그 간절함이 모여 거대한 빛의 혁명을 이루어 냈듯이 검찰개혁 또한 결국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검찰개혁은 어느 한 정당의 과제도, 어느 한 정부의 과제도 아닙니다. 내란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 낸 국민들의 오랜 염원이자 광장에서 시민과 함께 약속했던 시대적 과제입니다.

개혁의 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의 논의에 이르기까지 개혁의 의지를 확고히 보여 준 정부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검찰개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빛의 혁명 국민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엄중한 책임감을 안고 법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새롭게 출범할 공소청과 중수청이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는 제2의 검찰청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겉테기만 바뀐 권력기관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행정부 공무원 조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오늘 논의하는 공소청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원칙으로 기소와 공소유지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입니다. 각 기관이 상호 협력하면서 권력을 견제하고 분산하는 국민주권 형사사법절차로 나아가는 첫 출발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그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수사·기소가 분리된 본연의 입법취지를 다시는 훼손할 수 없도록 법안의 설계와 권한 구조를 면밀히 살펴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처럼 국가의 모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잠시 부여받은 것입니다.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성역은 그 어디에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나누는 논의가 훗날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드는 국민의 대표자라는 마음으로 엄중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저희도 발언권을 좀 주셔야 되겠는데요.

○소위원장 김용민 예.

오늘 회의에서는 공소청법안 등 5건의 법률안과 공소청법 제정에 관한 청원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갈 순서이긴 합니다만 각 당 한 분씩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할까요?

그러면 나경원 위원님부터 한 말씀하시지요.

○나경원 위원 저는 참 오늘 비감한 마음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의 단순한 수사권 완전 박탈이 아니라 국민 인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선언의 날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오늘 민주당이 또다시 수정의견들을 내고 아까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민주당 안을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곳곳에 조악한 정치적 계산과 검찰에 대한 복수심과 적개심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의 공소 취소받으려고 여당 지도부에 굴복한 형국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지금 제가 법안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일종의 검사들을 강제 발령을 한다든지 중수청과 공소청에 대등 지위를 부여한다든지 검찰총장 지휘권 폐지라든지 뭐 이런 걸 쪽 보면요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검사들은 한직으로 유배도 마음대로 보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권의 입맛에 맞는 단위 청장 등을 통해서 수사와 공소유지를 각개 격파하겠다고 하는

데 그러면 검찰청법 8조인가요,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도대체…… 헌법 그리고 법률에 다 위배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견제와 균형이 권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데요 경찰이 수사를 잘못해도 이제는 검사가 바로잡을 어떤 수단이 없어 보입니다. 결국 그 과정에서 억울한 국민만 구제받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공소청 설치에 관한 법안, 사실 그렇잖아요. 기구 이름은 공소청이고 장의 이름은 검찰총장이다, 이것 완전히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중의 코미디.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공소청·중수청 만들고 그 공소청·중수청 만들어서 검사들이 안 가겠다고 하니깐 강제 발령 내겠다고 하고 이것 신독재선언 아닙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참 부끄럽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그런 미명하에서 책임은 사라지고 혼란과 공백만 커지는 그런 일대 혼란이 불가피할 거라고 봅니다. 권력의 비호를 받는 자는 안위를 얻을 것이고 호소할 곳 없는 국민은 피눈물 흘릴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보니까 법안에 각 청별로 수사심의위원회를, 그동안에 훈시, 규칙으로 있었던 것을 법으로 올리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검사들도 못 믿겠다고 각 청별로 수사심의위원회 설치해서 위원회가 200명 가까이도 구성할 수 있는데 이제 시민재판, 인민재판, 인민기소 그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참 씁쓸한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권리를 완전히 박탈하는 공소청 설치에 대해서 우리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대한민국 검사들 다 사표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번 사법 파괴법은 판사들도 다 사표 내야 되는 것 아닌가. 정말 판검사들이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이렇게 국민의 인권과 국민의 기본권과 국민의 피해구제의 모든 사법 기능, 수사 기능이 망가지고 있는데 침묵하고 있는 것은 매우 비겁하다라는 말씀도 곁들여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아주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제 검사도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도, 경찰도 제자리에서 가장 열심히 일해서 국민들로부터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검사가 얼마나 못 된 짓을 해 왔는지 정치검사 수준을 넘어 부패검사들이 있었고 그 부패검사의 절정이 윤석열 아니었습니까? 부패검사의 부인이 김건희 아니었습니까? 윤석열과 김건희가 이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트리거였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없이 많은 검사들이 아주 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검사들이 현장에서 범죄자를 잡는 경찰과 협조해서 범죄자들을 잡고, 기소하고 그리고 공소유지를 해서 처벌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없이 많은 검사들을 격려하고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윤석열과 같은 특수 검사, 중수청 검사 등이 그 권력을 함부로 쓰고, 그 칼을 함부로 쓰며 필요한 곳마다 자기 마음에 안 들 때 칼로 찔러 대고 쏘서 댔습니다. 그 절정이 김용민 위원장의 말씀처럼 끝내는 불법 비상계엄이었습니다. 검사를 하다 검찰총장이 되었고 그를 옹립해 가며 대통령을 만들었고 그가 불법 비상계엄을 만들었고 대한민국 전체의 군인, 경찰 그리고 모든 검사들까지 흔들려 와서 모두 감옥으로 갔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하게 검찰개혁을 그리고 사법개혁을 이룰 시점이고요. 그래서 참 많이 국회에서 애쓰셨습니다. 국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논의했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이 검찰개혁 법안이 이제 완수, 앞으로 또 필요하면 더 개혁해 나가야 될 것이고요. 첫 단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과정 속에서 제가 영국, 프랑스 등을 다녀왔고 이번에도 출장 중에 알아봤는데요 영국·프랑스 전부 다 검사가 수사하지 않습니다, 기소만 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기소만 하면 마치 큰일 날 것처럼 말하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저는 사실을 왜곡하지 말라라고 지침을 가하고요.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경찰, 중대범죄수사청은 이제 전문적인 수사청이 되어서 어마어마한 디지털 범죄, 딥페이크, 사기·학대, 모든 것을 전문적으로 수사하고 그것을 송치해서 검사가 확실하게 기소하고 그리고 또 공소유지 해서 처벌하는 좀 더 전문적이면서도 확실하고 빠른 수사 단계를 거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또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이 과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해 놓고 그래서 과하지 않게 하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를 각 단위마다 두고 그 수사심의위원회가 철저하게 보완할 수 있게, 감시할 수 있게, 잘못하면 교체도 할 수 있게, 잘하면 격려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또 수사심의위원회는 인민재판이다. 사람이 많으니 좀 더 안전하게 가는 걸 인민재판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였지 생산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비판을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잘 논의해서 통과시켜서 전체회의, 본회의까지 통과시키고, 대한민국이 지금 위상이 아주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나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이제 정리해 내고 진짜 대한민국 만들어 가는 과정 속에 오늘 법사위가 주요한 법안을 심의하고 통과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의 위상이 좀 더 공정한, 아주 공정한, 그리고 범죄는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런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저희들의 역할에 더욱더 열심히 하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마지막으로 박은정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은정 위원 2024년 8월에 대표발의한 공소청법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지나서 이제서야 심사에 이르게 된 것이 저로서는 좀 아쉽기도 하지만 또 감개무량하기도 합니다.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여론이 70%가 넘어서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윤석열 검찰 정권하에서 이루어졌던 많은 검찰권 남용과 검찰을 기반으로 한 내란을 저지른 탄핵된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분노의 표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검사들을 좌천시키고 날려 버리고 그리고 고통을 주는 수사를 했던 정권은 윤석열 정권입니다. 이 법의 어디에 마음에 안 드는 검사들을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검사의 수사권은 입법사항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결정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자신들이 헌법기관인 것처럼 검사의 수사권을 개정·수정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위헌이라는 얘기를 끝도 없이 했습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청으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수사·기

소 분리의 검찰개혁의 대원칙입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로 검찰개혁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동안 78년 동안 무소불위의 검찰권 남용으로 많은 국민이 고통받았습니다. 윤석열 내란정권을 거치면서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간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이 소위에서 검찰개혁 법안 중에 공소청법을 실질적으로 국민이 바라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범죄피해자를 제대로 국가가 돌보는 시스템으로 검찰개혁 법안을 제대로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조금 전에 야당 위원님께서 이 법에 대해서 공소취소를 위해서 여당 지도부에 정부가 굴복했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은 근거 없는 의혹이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아니, 왜 근거가 없습니까? 내일 국정조사안도 공소취소 거래에 관한 조작기소에 대한……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언론인의 취재는 여기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위원 위원장님, 함부로 야당 위원 말을 근거 없다고 얘기하는 건 됩니까?

○조배숙 위원 맞습니다. 왜 근거가 없어요?

○나경원 위원 아니, 명백히…… 내일 조작기소 국정조사안 올린다면서요?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1. 공소청법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54)

2.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28)

3. 공소청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7197)

4.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40)

5. 검찰청법 폐지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0)

6. 공소청법 제정에 관한 청원(박은정 의원 외 3인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283)

(14시43분)

○소위원장 김용민 의사일정 제1항 공소청법안부터 제5항 검찰청법 폐지법률안까지 5건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6항 공소청법 제정에 관한 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나경원 위원 조작기소, 조작기소 올린다면서요, 국정조사?

○이성윤 위원 증거가 없지요.

○곽규택 위원 되게 찢리시는 게 있나 봐.

○조배숙 위원 마이크 잡았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나경원 위원 대통령이 어제부터 SNS 하고…… 다 속이 보이는데.

○이성윤 위원 뭘 속이 보여요, 납득이 안 되는데.

○서영교 위원 윤석열이 그렇게 잡으려고 했는데 하나도 안 나온 거 아니에요?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니까 근거를 제시하시면 되지요, 근거를 제시 못 하면서……

○곽규택 위원 근거를 제시할 게 뭐 있어요? 정부 여당에서 말하는 거 보니까 맞더구먼.

○나경원 위원 지금 다 기소돼 있잖아요?

○소위원장 김용민 근거를 제시하셔야지.

○조배숙 위원 위원장님, 좀 균형을 맞춰서 진행하세요.

○서영교 위원 위원장님 말이 딱 맞구먼요.

○나경원 위원 추미애 위원장 닳아 가지 말고.

○곽규택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법안심사자료 이게 오늘 오전에 이야기한 거 다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소위원장 김용민 잠깐만요, 그거는 아직 반영이 안 돼 있을 거라……

○곽규택 위원 그러면 이거를 정리하고 해야지.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니까, 이제 시작합니다.

자, 그래도 먼저 검토보고를 받고……

순서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언론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교섭단체의 조정안이 있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사실상 그 조정안을 중심으로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위원님들에게는 배포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시고 기관 의견을 듣는 동안 교섭단체의 대안을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을……

○나경원 위원 그러면 민주당 대안이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니예요?

○소위원장 김용민 저희 교섭단체 대안이지요.

○조배숙 위원 한쪽 교섭단체지, 교섭단체라고 하니까 헛갈리잖아요.

○소위원장 김용민 ‘교섭단체 간 합의안’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고 ‘교섭단체 대안’이라고 했고 지난번에도 나눠 드릴 때는 교섭단체의 대안이라고 항상 말씀드리면서 했었어요.

○나경원 위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섭단체 민주당의 대안’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조국혁신당하고 같이하시면 그것까지 다 명기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알겠습니다. 오늘 따라 유난히 이의 제기가 많으시군요.

○곽규택 위원 본회의 올라가면 또 바꿀 것 아니예요, 본회의에서.

○나경원 위원 그러니까 또 바꿀 것 아니야.

○곽규택 위원 전체회의에서 또 바꾸고.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안 바뀌지게 합의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정희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위원님들, 소위자료 보시겠습니다.

지금 정부안 중심으로 말씀드릴 거고 정부안은 본칙만 65개 조항입니다. 크게 공소청 조직, 공소청의 장, 검사의 직무, 검사의 처우, 공소청 직원, 5개의 큰 쟁점이 있고요 그 밖의 사항들이 있습니다.

소위자료 1페이지 보시면, 오늘은 5개의 법안입니다.

이미 박은정 의원님 안과 김용민 의원안 중심으로 지난 25년 7월 25일 소위 심사를 했고 여러 번의 공청회와 입법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정부안 공소청법안은 3월 3일 날 국회에 접수가 되었고 이후에도 이용우 의원님이 법안을 내셨고요, 관련해서 입법 청원한 게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정부안의 주요 내용 말씀드리면 조직체계 관련해서는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지청 이런 3단계 구조로 되어 있고 장을 검찰총장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직무와 관련해서 지금 현행에 있는 수사권은 명시하지 않았고 그 밖의 사항 등을 더 추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검사의 처우와 관련해서 정원·보수·징계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것은 지금의 내용과 같고요. 대신 징계·처분에 의한 파면도, 지금은 탄핵에 의한 파면만 가능하지만 징계·처분에 의한 파면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 밖에 파견·겸임 금지 조항 그리고 정치운동 금지…… 했을 때 5년 이하 징역, 공무원법보다도 높은 법정형입니다.

그리고 공소청 직원과 관련해서는 수사관 관련 규정과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수행 근거는 삭제하고 다른 내용을 넣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문대비표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6페이지, 주요 내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안은 공소청을 지금 현행과 같이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지청 이런 3단계 구조로 되어 있고 의원님 안 중에는 고등공소청을 없애자는 의원안들이 있습니다. 2단계 구조로 가자는 거지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조직법과 관련해서는 법을 먼저 할 게 아니라 향후 공소청의 기능 및 검사의 직무재편 방향을 어떻게 할지 이 부분을 결정하신 다음에 조직체계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즉 기소검사, 공소유지 검사를 분리할 것인지, 공소유지 업무도 심급별로 다르게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따라서 조직구조라든가 규모가 결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공소청의 장과 관련해서는 기관장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안에는 총장이 아니라 청장으로 두는 안도 있고요.

다음, 검사의 보직 관련해서 총장에게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검사 보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공소청 직원의 보직 관련 권한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을 수 있는 권한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검찰총장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공소청장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헌법적인 논의가 있습니다. 헌법에는 국무회의 심의 사항의 하나로 검찰총장이 명시되어 있어서 헌법에 맞게 해야 되는 게 아닌지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검사의 직무와 관련해서는 하단의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검사의 직무와 관련된 조항이 법안의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현행은 범죄수사권을 명시하고 있는데 정부안에는 그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안에는 현행에 없는 영장 청구·집행 지휘권,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협의·지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특사경의 지휘·감독권이 현행과 같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직무를 위해서 형소법 등에 규정된 사항이라 그래서 다른 법령과 연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범죄수사권 관련된 내용을 형소법에서 정한 다음에 이를 통해서, 링크된 조항을 통해서 권한을 해석하려는 법제원리로 판단됩니다.

1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법제원리상 공소청의 기능에 해당하는 검사의 직무는 조직법에서 결정해야 하므로 수사권 부여 여부 및 그 범위 등을 공소청법에 직접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럼에도 정부안과 같이 형소법 등에 규정된 사항으로 열거하고 보완수사권 등은 추후 형소법 개정 시에 논의할 것인지를 판단해 주면 되겠습니다.

특사경 지휘·감독과 관련해서는 그대로 둘 것인지 검토가 필요한데요. 특사경 지휘권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특사경을 누구로 할 건지 지명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수사개시 보고를 하고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의 지휘 내용에는 특별히 한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사를 마치면 모든 전건에 대해서 검찰에 송치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일반 사법경찰관리하고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를 고려하시어 권한을 부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4페이지, 검사의 처우에 관련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의 정원·보수·징계 모두 현행과 같이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법률로 정하도록 할 것인지 일반 공무원처럼 영으로 내릴 것인지를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신분보장, 현행과 같이 검사의 신분보장 규정을 정부안에 두고 있습니다.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징계처분에 의한 파면도 추가하고 있습니다.

겸임·과건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 직원 겸임이 가능하도록 현행과 같이 규정되고 있고요. 새로 들어간 내용이 있다면 중수청에 대한 과건·겸임은 금지했다는 것입니다. 의원님 안 중에서는 이런 겸임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안도 있으시고요.

다음, 정치운동 금지와 관련된 부분을 명시했고요. 현행과 같이 5년 이하 징역 이런 법정형으로 했습니다. 의원님 안 중에서는 직권남용죄도 추가하자는 안도 있었습니다.

26페이지, 검토의견 말씀드립니다.

정원·보수·징계를 영으로 할지 법률로 할지는 정책적 사항이나 검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과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나머지 사항은 영으로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신분보장과 관련해서는 탄핵 외에도 징계절차에 의한 파면을 둘 것인지 결정하면 됩니다.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 중의 하나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결정하시면 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 정치운동 금지 같은 경우는 일반 공무원법보다 법정형이 상향돼 있어서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직권남용죄 같은 부분은 이미 형법에 있는 조항이라 입법 실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공소청 직원과 관련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도표를 보시면 지금 검찰청법에는 공소청 직원에 관한 세부 조항들이 있습니다.

검찰직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 수사사무관 이렇게 모든 직렬 등을 나열하면서 직무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명을 받은 수사, 형사기록 작성, 국가송무 업무 보좌 그리고 이 모든 직원들을 수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사법경찰관인지를 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안에서는 수사권이 없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 조정하고 있는데요. 상세하게 규정된 직렬 직원들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통일화시키면서 그 업무는 ‘검사의 명을 받은 검사 직무’, ‘수사’ 대신 ‘검사 직무’로 워딩을 넣었고요.

다음에 4~7급 직원은 검사 보좌, 8·9급 직원은 4~7급 직원 보좌, 4~8급 직원은 형사 기록에 자기의견 기재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직원의 구분과 관련해서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이렇게 4~7급 직원이 검사를 보좌하고 8·9급 직원의 4~7급 직원 보좌를 명시한 것은 기존의 수사업무 보좌를 위해서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로 구분했던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것이지만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직급에 따라서 상하관계를 구분하는 것은 일반 공무원법 원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개정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기타 조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법경찰관리 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현행법에 없는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 간의 협력관계 규정이 신설되었구요. 수사 중지 요구와 관련해서는 사법경찰관리가 부당한 행위 시 수사중지, 직무배제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안에 넣었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립니다.

현행 검찰청법은 교체임용 등 요구 대상을 서장이 아닌 경정 이하의 사법경찰관리로 한정하고 있으나 정부안은 계급의 제한을 삭제함과 동시에 일반 사법경찰관리 외에 특사 경까지 포함시켜서 그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정부안의 필요성 및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54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심의위원회 규정을 두었습니다.

지금 정부안은 사회적 관심 집중 사건 등 심의를 위한 사건심의위원회를 각 고등공소청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제기 여부, 상소제기 여부, 그 밖에 검사의 직무와 관련해서 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심의효력과 관련해서는 검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 중에서는 심의위원회 의결에 기속력을 부여하자는 안도 있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검찰청 예규에 있던 내용이 법률로 상향된 거고요, 공소권 행사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 바람직하고요. 다음에 형소법상 기소편의주의 원리에 따른다면 심의 결과

에 기속력을 두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정부안에는 이런 위원회 외에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검사인사위원회, 검사적격위원회 등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위원 중 법무부장관 위촉·지명 몫을 현행 6명에서 3명으로 줄여서 그 수를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한 검토의견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조항 말씀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정부안의 시행일은 정부조직법 개정일에 맞추어서 올해 2026년 10월 2일입니다. 그리고 검찰청법 폐지를 부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어서 이 법 시행 전에도 검찰총장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음에 중요한 내용은 소관 사무에 대한 경과조치와 직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입니다.

기존의 검찰청 소관 사무 중 공소청 소관 사무로 이관을 해야 되는데 수사와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에 이송하되 공소시효 임박 등 사건은 공소청이 계속 수사하도록 하고 6개월 내 종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와 공무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에 대해서는 특별한 내용 없이 이 법 시행 당시 검찰청 검사는 공소청 검사로, 검찰청 공무원은 공소청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내용만을 두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등의 인사와 관련해서 지금 정부안은 모든 것을 간주 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만 위임에 대한 대강의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지 않아서, 통상 정부조직 분리개편 시 경과조치는 종전 기관 소속 공무원을 어느 기관으로 이체할 것인지를 명시하고 대령에는 그 정원만을 위임하는 것이 통상 예입니다. 그러나 정부안을 보시면 검찰청 검사는 공소청 검사로, 검찰청 공무원은 공소청 공무원으로 간주한다는 규정만을 두고 있어서 대령으로 위임할 대강의 내용을 법률에 언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진수 법무부차관, 기우중 법원행정처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법무부부터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정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 직무를 재편하고 그 직무를 책임 있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공소청법안을 성안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공소청법안은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소청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 부분을 명확히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고등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검찰권 행사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징계에 의한 파면 도입, 근무성적평정에 무죄판결률과 무죄사유 반영, 정치 관여죄 신설 등 검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도 도입하였습니다.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검사에게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여 소신 있는 업무 처리도 보장하였습니다.

본 법률안은 범정부 차원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쳤으며 당의 의견도 상당 부분 반영한 법안임을 감안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다음,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중 법원행정처는 종전 입장을 유지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토론해 주실 순서인데요. 참고로 저희 소위에서는 지난 2025년 7월 28일 날 공청회를 한번 했었고 25년 9월 5일 날 소위 입법청문회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의견들 상기하시면서 토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토론 방법을, 지금 이 법이 제정법이니만큼 배포해 드린 교섭단체 중 민주당의 대안을 기준으로 조문별로 토론을 이어 가면서 검토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성운 위원 좋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게 좋으시겠지요? 야당 위원님도 그게 나오시겠지요? 지난번에 하던 방식의 전체적인 개괄적인 토론보다는 법조문 하나하나를 쭉 보면서 토론하시는 게 낫겠지요?

○곽규택 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조문별로……

○소위원장 김용민 하시고 그렇게 하실래요?

○곽규택 위원 예.

○소위원장 김용민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곽규택 위원님.

○곽규택 위원 오늘 비록 소위 논의기는 하지만 그동안 70여 년 수사의 중추를 맡아왔던 검찰청이 사실상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하게 소위 논의도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래는 검찰청법에 규정되어 있는 검사라는 직업의 성격 자체가 수사를 위한, 무슨 경찰에서 분리돼 가지고 똑똑한 경찰을 검사로 만든 게 아니에요. 판사 중에서 유럽에 있던 수사판사·예비판사 이런 제도를 우리나라는 검사가 담당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전부터 사법관에 준하는, 판사에 준하는 지위 보장도 필요했던 것이고 그 판사의 입장에서 어떤 신분보장, 중립적인 지위 이런 것을 다 규정해 놔던 것이지요.

그런데 국민들이 어떤 대형 범죄 사건에 있어 가지고 이런 기소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다 그리고 신분보장을 받는 검사가 수사를 하는 것이 경찰에서 하는 수사보다는 대형 사건이라든지 어떤 재벌의 사건이라든지 고위 정치인, 정부 중요 인사에 대한 수사에 적합하다 하는 것을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 체험했기 때문에 검사라는 제도가 유지돼 왔던 것이지요. 물론 그 수사 과정에서 과잉수사 논란 또는 일부 검사의 일탈행위 이런 것은 어떻게 규정을 하든 간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청법을 공소청법으로 바꾼다고 해 가지고 검사라는 직업 자체가 완전히 무결한 그런 것으로 태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가장 핵심은 어차피 검사가 그동안 역사상으로 수사를 같이 해 왔던 직이었는데 이제 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뗀다, 이게 제일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그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과거 검찰의 일부 잘못을 문제 삼아 가지고 무슨 분풀이·화풀이하듯이 정치적인 진영 입장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검찰청이라는 제목을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검찰총장과 검사가 헌법상에 규정돼 있다 보니까 기관은 공소청이라고 하면서도 검찰총장, 검사가 등장을 해요. 저는 그렇게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서 굳이 공소청이라는 특이한 이름을 쓸 필요 없이 검찰청으로 그냥 두고 여기 있는 규정들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쉽게 말해서 여당안에 의하면 무슨 ‘광역공소청’ 이런 용어를 써요. 이것은 전형적으로 검사가 경찰하고 같은 지위의 기관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희한한 용어가 나온 것 같은데, 공소 제기와 유지에 집중하라는 법 개정의 취지를 본다면 더욱더 법원의 심급과 맞춰 줘야지요. 대법원에 대응하는 대검찰청, 고등법원에 대응하는 고등공소청 그다음에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 이렇게 해 놔야 국민들이 이해하기 편할 거 아닙니까, 각 기관이 무슨 일을 담당하는 것인지.

그리고 조문별로 이야기를 할 때 살펴보겠습니다만 조문 각각의 요소요소에 어떤 효율적인 검사제도의 운영 이런 측면보다는 어떻게든 그동안의 검사의 지위라든지 신분보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박탈하고 없애고 하는 데만 중점을 뒀 가지고 과연 이게 법 취지에 맞느냐 하는 것에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 정부 여당에서 검찰개혁이라는 무슨 어떤 신앙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서두르고 있지만 사실 검찰청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형사소송법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관에 대한 규정이라는 측면이 크지요. 그렇다면 먼저 수사권에 대해서 특히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보완수사 의무에 대해서 형소법에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그리고 사법경찰관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소법에 대한 논의가 먼저 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그런 핵심적인 논의 없이 분풀이식의 공소청법 제정 또 중수청법 제정 이것은 아직 결론 낼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조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조문별 검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또 총론적으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조배숙 위원님.

○조배숙 위원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지만 검찰개혁이 필요하지요.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도 이 검찰을 아예 그냥 폐지한다? 저는, 검찰이 잘못된 게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건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검찰을 악마화하고 아예 이렇게 폐지까지 가는 것이 과연 개혁이냐 그리고 기관을 이렇게 폐지한 것이 나중에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받을지, 저는 지금 이렇게 이것을 통과시킨 법사위를 나중에 역사가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럴 경우에는 검찰이 수사를 못 합니다. 못 하고 이제 중수청 그리고 경찰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러면 이게 수사기관이, 사정기관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기능이 약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범죄자는 날뛰

고 국민들이 피해가 크게 됩니다.

그리고 누차 다들 반복적으로 얘기했지만 수사권을 거의 다 독점하고 있는 경찰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저는 그 결과는 예측이 됩니다, 뻔합니다. 저희 국민의힘으로서는 검찰의 폐지를 의식 때문에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답답하게 생각하고 근본적으로 반대하지만 지금 이 새로운 공소청법도 보면 그 나름대로 좀 합리성이 있으면 좋을 텐데 각론에 가서 보겠지만 분야 분야마다 살펴본다고 하면 저는 정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지방공소청 부장검사 사무를 ‘그 부의 사무’에서 ‘그 부의 행정 및 일반 사무’로 변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거 보면, 그러면 부장검사가 하는 일이 뭐지요? 그래도 그 부의 사무를 지휘하고 잘못된 걸 시정하고 견제해야 되는데 부장검사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그냥 행정·일반사무만 하면, 그 부원의 검사가 하는 일을 지휘·감독해야 되는데 그걸 전혀 못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필요한 이유는, 그렇게 검사들 못 믿어서 검찰청 폐지했는데 검사들이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통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데 왜 그거는 또 삭제했는지 그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얼핏 보니까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그냥 두 단계로 한다 하는데, 지금 재판의 경우에 공소청이 하는 일이 공소유지 아닙니까? 그러면 다 심급별로 해야 될 텐데, 공소청과 광역공소청으로 하면 대법원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누가 그 공소를 관리합니까? 이런 거랄지 이걸 보면서 저는 왜 이런 엇박자가 나느냐, 저는 이게 제대로 된 방향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방금 조배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 관련해서 조배숙 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하고, 저희가 배포한 자료에 내용이 수정 안 된 채로 배포된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장검사 관련해서 ‘부장검사는 그 부의 사무를 처리한다’라고 저희가 정리했는데 이게 ‘행정 및 일반사무’가 끼어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배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타당하고 그렇게 바뀌서 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18조 3항에 있고 25조 3항에도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러면 ‘행정 및 일반’이라는 말이 빠지는 거예요?

○소위원장 김용민 예, 맞습니다. ‘행정 및 일반’이 빠지고 원래대로 그냥 사무, ‘그 부의 사무를 처리한다’ 이렇게 그대로 갑니다. 그렇게 정리되는데 이게 지금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아마 수정하는 과정에서 실무진의 실수인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윤 위원 조문별 토론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조문별로 저희가 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총칙 부분에서 다양한 토론을 하실 것 같고 뒷부분은 절차적인 부분들이라 좀 빠르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1조(목적)에 대해서는 특별히 토론할 게 없으시지요?

그러면 2조(공소청)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소청을……

○**곽규택 위원** 이 조문에 대해서 법무부차관의 입장을 조금 이따 또 확인해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조문 할 때마다?

○**나경원 위원** 하나씩 법무부 얘기를 들어 보고……

○**소위원장 김용민** 제 얘기는 토론하실 때 그거를 차관이나 차장에게 직접 질의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한번에 같이 활용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조문별로 입장을 듣고 토론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곽규택 위원** 예를 들어서 2조 같으면 2조에 대한 기본적인 의견은 뭐다 하면 우리가 조금 질의응답하고 그다음에 4조 같은 경우도……

○**소위원장 김용민**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제가 보니까 특징적인 것들, 기관의 의견이 먼저 필요한 것들을 제가 먼저 질의하고 토론을 이어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관님, 2조가 공소청에 대해서 3단 구조를 유지하되 그 명칭이 대공소청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이렇게 3단 구조로 가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안에서 애초에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규정했던 것은 법원과의 동급이라는 그런 특권의식 때문이 아니라 공소의 제기·유지, 재판의 집행 등 공소청 업무가 각급 법원에 대응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공소청의 명칭 변경은 검찰개혁의 취지와 관련성이 좀 약한 편이고 공소청의 명칭과 대응하는 법원의 명칭이 다를 경우에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되는 면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명칭 관련해서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실 사항으로 보지만 이런 측면도 함께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곽규택 위원** 한 번 더 간단하게만 좀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공소청법에 공소청이라고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검찰청을 의미하는 의미에서 공소청이라고 2조부터 등장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시행을 한다면 기관으로서의 지금의 대검찰청을 말할 때와 일반 검찰 전체를 말할 때 당연히 국민들에 대한 혼동이 옵니다.

그리고 이 관련된 다른 법률들에도 대검찰청이라는 기관을 말할 때와 지금의 검찰청이라고 하는 전체 검찰을 말할 때의 어떤 구분이 있어야지 이렇게 공소청법에다가 지금의 대검찰청에 상응하는 기관을 공소청이라고 그냥 못 박아 놓아 버리면 저는 굉장히 개념상의 혼란이 올 것 같고요.

대검찰청에 대한 그 어감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여당 위원님들 싫으신 거 아닙니까? 그래도 대법원에 상응하는 기관은 대공소청, 고등법원에 상응하는 기관은 고등공소청, 지방법원에 상응하는 기관은 지방공소청 이렇게 해 줘야 전체 공소청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내 사건이 지금 항소심에 가 있으니까 그것을 대응하는 기관은 기본적으로 고등공소청이겠구나’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이렇게 두면은요 광역공소청이 공소청보다 위에 상위기관인 것 같아요. 이것 안 맞아요.

○소위원장 김용민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 공소청이 사실 기본적으로 3단 구조가 말이 되지 않거든요, 이게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 국회에서 마련한 법안은 2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공소청·지방공소청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부 법무부에서 이 3단 구조에 대해서…… 자기들이 굉장히 법원화돼 가지고 법원처럼, 사법기관처럼 이렇게 운영을 해 왔던 거거든요, 검찰청이.

공소청이라고 하면 특징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국세청은 대국세청이 있습니까? 국세청·지방국세청이 있는데 그렇게 공소청이 특징이 안 된다는 것에는 제가 동의하지 않고요.

그리고 실제로 고등검찰청이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심급에 따라서 대검·고검·지검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계속 얘기는 하지만 고검에서 실제로 고법에 있는 재판을 얼마나 수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지검에 있는 검사들이 실질적으로 재판을 많이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공소청에서 충분히 그 역할을 수행을 할 수 있다, 재판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고등공소청은 폐지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사실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동안 해 왔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명칭에 대해서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것보다는, 저는 사실은 이게 2단 구조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부에서 지금 어쨌든 이 3단 구조로 잠정적으로 그렇게 가기로 했으니 다만 이것을 행정기관으로서의 존재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행정기관은 기본적으로 공소청 그다음에 지방공소청 이게 맞는 거지요. 그리고 그 중간에 광역공소청을 넣어서 그동안 고등공소청에서 하던 업무가 일부 있으면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에는 저는 광역공소청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나경원 위원님.

○나경원 위원 지금 저희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고, 공소청은 기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게 본래의 기능 아닌가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지금 박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고등법원 사건을 꼭 고등검찰청에서 하지는 않았으니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 있냐 하는 건데, 원래 공소청의 업무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민주당의 원칙에 따라서 기소만을 담당하게 되면 대검찰청에 해당하는 대공소청은 대법원 사건 기소유지를 하는 것을 가장 본연의 업무로 할 것이고.

원래 사무분담 자체는 그렇게 분담이 돼 있던 거 아닌가요? 그냥 편의적으로 그렇게 지방검사들이 했나요? 원래 분담 자체도 대검·고검·지검이 이렇게 기소유지 하는 것, 고검이 고등 사건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원칙인데, 다만 편의적으로 예외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예외가 원칙이었는지 그것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법원 심급에 대응하는 예컨대 고등법원 재판은 고검에서 공소유지를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이 되어 왔었습니다.

○나경원 위원 그다음에 대법원 사건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대법원 사건도 상고제도와 관련해서 대검 공판송무부에서 해야 될 조치들과 관련해서는 대검 공판송무부, 대검에서 대검 검사가 조치해야 되는 사항들이 형소법에 열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대검에서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나경원 위원** 그래서 이것은 무슨 행정기관이다 사법기관이다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오히려 공소청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기소를 하고 유지하는 기소유지가 본연의 업무가 된다면 이게 법원에 대응해서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이상한 이름으로 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이렇게 해 놓으면 오히려 당사자들만 더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그 권위의 문제도 아니고 기소 제기 및 유지라는 검찰의 본연의 책무를 한다는 점에서도, 공소청의 본연의 책무에 집중한다는 점에서도 이런 용어는 원래 쓰는 것처럼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 해 주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에게도 편의를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정하는 건 좀 억지로 보여요. 그래서 민주당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 너무 조잡하고 억지스럽다.

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고등공소청이 몇 개 있습니까? 광역마다 다 있나요? 아니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나경원 위원** 지금 17개 시도에 다 있어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아닙니다.

○**나경원 위원** 아니잖아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6개 있어요, 6개.

○**나경원 위원** 그래서 이게 더 이상하다는 거예요. 안 맞다는 거지요.

그러면 광역공소청 이름을 예컨대 세종 같으면은 대전·충남·충북 합쳐서 대전고검이 다 관할하나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충남·충북·세종까지 해서 대전고등검찰청에서 담당합니다.

○**나경원 위원** 그러면 대전공소청이 대전광역공소청이라고 해야 될지 이것을 대전충남충북세종공소청…… 굉장히 혼란만 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원래대로 해 드리지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복수심에 불타서 하는 것 같아요. 이러니까 우리한테 욕먹는 거예요.

○**소위원장 김용민** 복수심 하나도 없습니다.

○**나경원 위원** 그러면 이것 이름 바꿔 주세요.

○**소위원장 김용민** 제가 잠깐만 조금만 정리 한번 해 볼게요.

기우종 차장님, 지금 재판을 하실 때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 실제 고검 검사나 대검 검사가 관여하는 것과 지방검찰청의 검사들이 관여하는 것의 비율을 혹시 좀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비율까지는 모르고 가끔 예외적으로 고등 형사재판에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관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서영교 위원** 간혹?

○**소위원장 김용민** 대체적으로는 고검 검사들이 관여를 하고 있나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것은 한번 조금 더 확인해 봐 주시고요.

또 하나만 제가 더 확인해 볼게요.

해외에서도 이렇게 법원의 심급별로 검찰청이 심급을 가지고 있고 법원 옆에 똑같은 구조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나라를 본 적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중** 그것은 드물다고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없지요? 그러니까 본 나라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중** 기억에는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없으시지요? 지금 특이한 구조이지요, 이게. 해외에서도 이렇게 법원 옆에 똑같이 검찰청을 심급별로 놔두고서 같은 건물을 쓰는 경우가 있는지를 질의드렸는데 본 적이 없다라고 그 말씀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본 적이 없지요? 이게 우리나라의 독특한 구조인 거잖아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중**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이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이성윤 위원님 아까 먼저 손 드셔서요.

○**이성윤 위원** 차관님, 우선 공소청법을 보시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이것은 정부에서, 저희가 기본적인 틀은 과거에 검찰이 잘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수사 부분을 떼어내고 검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기 위한 구조를 논의해서 마련한 것이어서 그런 성안 과정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성윤 위원** 저는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조직을 만드는 것은 대단히 합리적이다. 저도 박은정 위원님 말씀처럼 고등공소청이 왜 필요한가에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2단 구조로 공소청·지방공소청이 있으면 좋겠지만.

저는, 법원의 심급에 맞춰서 하자는 것은 검사들이 과거 70년 동안 자신들이 준사법기관이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만든 명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명칭을 두는 것은 검사도 이제 행정기관이라는 것을 명확히 선언하는 규정이라고 생각하고 매우 시의적절하다.

저는 장기적으로 광역공소청은 없어지면 좋겠지만 지금 정부안에서 3단 구조로 간다고 하니 수용을 하겠습니까마는 적어도 과거에 검사들이 준사법기관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수사권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내세워서 간섭을 못 하게 하면서도 마음껏 수사를 해했던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2조의 규정은 지극히 이제는 검찰 검사들도 행정기관이다, 국민의 통제를 받는 행정기관이라는 것을 선언한 규정으로서 매우 시의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자연스럽게 2조와 3조가 아마 같이 논의가 되는 구조일 것 같은데 포함해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배숙 위원님 토론하시겠습니까?

○**조배숙 위원** 예.

○**소위원장 김용민** 하십시오.

○**조배숙 위원** 저는 결국 차이는, 지금 광역이라는 이름을 왜 썼는지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차관님, 이전에 고등검찰청에서 고등법원 재판의 공소유지에 관여를 할 때 지방검찰청의 검사들이 와 가지고 공소유지 하는 경우가 좀 있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검사 생활을 했지만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굉장히 복잡하고 특수부

같은 아주 관심 있는 사건, 그런데 이게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1심에서 수사했던 검사가 공판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도 관여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공판에만, 그 기록만 본 사람하고 실제 수사한 사람하고는 사건을 이해하는 게 전혀 다르지요. 그래서 이것의 공소유지를 위해서, 유죄를 끌어내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파견 형식입니까, 그렇게 해서 관여를 한 것이지 이게 그냥…… 그러니까 그것은 예외적인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고등검찰청이 필요 없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조배숙 위원 그러면 사법부를 봅시다. 사법부, 1심에서 지방법원이라 하고 2심에서 고등법원이라고 하지 광역법원이라고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왜냐? 이 광역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잘 보셔야 될 것이, 광역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구역 단위입니다. 그렇지만 고등이라고 하는 것은 상급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광역이라고 하는 것은 광역지자체 해 가지고 광역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초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광역이라는 것은 어떤 행정 개념이에요, 치안을 전제로. 어떻게 보면 경찰 용어지요.

그런데 고등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닌 것이지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계급인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자꾸 왜 광역이라는 용어를 고집을 하는지…… 경찰은 광역이란 말을 할 수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고등법원에 어떻게 보면 맞추어서 공소유지를 하는데 고등이라는 용어를 굳이 광역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저는 혼란스럽고 원래의 그 취지에도 맞지 않다. 그래서 저는 고등이라는 것을 자꾸 이렇게 광역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온당하지가 못하고 어떤 감정적인 개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소청 그다음에 고등공소청이라고 두는 것이 맞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국민들도 생소할 것 같아요, ‘광역이 뭐야?’. 경찰에 있는 용어인데, 이게 무슨 경찰과는 다르고…… 아니, 광역공소청이면 광역수사대 이래 가지고 우리는 수사하는 기관으로 아는데 또 그런 오해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고등이라는 용어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차관님께, 제가 선거법으로 기소가 됐는데요 1심 법원에서 재판할 때 북부지검에서 와서 했거든요. 2심 할 때도 북부지검에서 와서 했어요. 대법 할 때도 북부지검에서 하던데, 대법에서 할 때도 상고이유서를 북부지검에서 냈다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처럼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고검은 뭐 하는 데지?’ 이런 생각도 많이 해 봤는데, 그러니까 지검에서 내가 고발했는데 제대로 처리를 안 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항고를 고검에다 했거든요. 이 정도는 제가 해 봤는데……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께서 낸 자료 100쪽의 숫자를 보면 보면 고검 인원 숫자가 지검 인원 숫자에 비해서 아주 적더라고요. 대전고검은 12명이에요. 대전지검과 청주지검을 같이 하면 200명 정도 되는데 대전고검은 12명, 현원이 12명이에요. 이 12명이 모두 다 고

등법원에 해당하는 공소유지를 담당하나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전원은 아닙니다. 그중의 일부 고등검찰청 검사가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중의 일부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왜냐하면 고등검찰청에서 공소유지뿐만이 아니라 항고 사건에 대한 심사 그다음에……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듯이 항고에 대한 심사를 하는 거를 봤는데 아까 이야기로는 지법에 해당되는 것은 지검, 고법에 해당되는 것은 고검, 대법에 갔을 때 대검이 하나요, 공소유지를?

○**법무부차관 이진수** 대법원 관련해서 형사소송절차에 따라서 검찰에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 있을 때는 대검찰청에서 대응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서영교 위원** 대검찰청에서 기소해라, 마라 이거 하더군요. 그러니까 공안부장이 내 것 넣고 기소해라, 마라 이거 지시하더군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건 아마도 대검에서 했던 재상고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거거든요. 내가 기소당할 만한 것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그런데 기소가 돼서 1심부터 무죄가 났는데, 내가 보니까 대검이 지검에서 하는 일을 위에서 지휘하더라 이거지요. 알아보니 위에다가 꼭 올랐고 위에서, 대검에서 이것 기소하라고 떨어져서 기소를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조배숙 위원** 검사동일체 원칙에서 합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가 위에서 지휘한다 이거지요.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으로는 대검이 대법 것을 관리하고 고검이 고법 것을 관리하고 지검이 지법 것을 관리하는 체계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방법원, 우리가 항소해서 고등법원, 상고해서 대법원이 있으나 우리의 지검·고검·대검은 그거하고는 다르더라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것이고.

그러나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듯이 지방공소청 그리고 광역공소청 그리고 공소청으로 놓는다면 지금의 뜻이 공소청은 전체를 관리하는 것처럼 되어 있고 광역공소청은 공소유지를 좀 더 넓게 유지하게끔 하는 것이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그래 오지 않았고 그래서 실제로 개혁안으로는 고등공소청은 없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연 이 공소청이라고 하는 것이 경찰청이나 아니면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올라오는 사건을 제대로 보고 기소할 것은 기소하고 공소유지 할 것은 공소유지 하고 처벌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을 확실하게 하는 일들을 해 주시고, 그러면서 공소청 전체는 행정업무처럼 전체를 관할하는 일들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위원님들께서 고등공소청은 고법을 대비한 곳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영교 위원** 예.

○**법무부차관 이진수** 먼저 아까 설명드린 것은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고등법원 사건은 고등검찰청에서 공소유지를 하고요, 대법원 계류 사건에 대해서는 대검찰청에서 상고 사건에 대한 의견서 제출과 사건 관리를 모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명칭 관련해서 한말씀만 드리면요 이 수정안에 따르면 전체 공소청에 대한 명칭과, 전체 조직에 대한 명칭과 기존의 대공소청이라고 했던 명칭이 동일한 명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는 대검찰청이 해 왔던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요.

또한 대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대검찰청에서 해야 되는 역할들이 형소법에 일부 규정되어 있고 또한 각종 검찰사건사무규칙 등 상고 사건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에 있어서도 전체 공소청의 조직이 아니라 기존의 대공소청에서 담당했던 역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을 같이하게 될 경우에 어떤 혼란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기존에 대검찰청이 했던 역할들은 어떤 건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상고 사건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심리하고 결정된 사건에 대해서 대검찰청 공판송무과에서 기본적인 사건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고 사건이 날 경우에……

○**서영교 위원** 기본적인 무슨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상고 사건에 대한 접수, 의견서 제출, 판결선고에 대한 결과 확인, 거기에 따른 집행 문제, 상고 사건에 대한 기록 관리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관리네요, 지금 말씀처럼.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또한 필요한 부분에……

○**서영교 위원** 그런데 ‘대’라고 하는 말을 써야 할 이유보다는 전체적인 관리인 거네요? 그 전에는 대검찰청에서 수사를 했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과거에 중앙수사부 등에서 수사를 했었습니다.

○**서영교 위원** 특수부를 놓고 중수부를 놓고 수사를 주로 하고 권력을 그렇게 쥐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 수사를 하지 않으니 큰 부분이 빠지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대법원 사건 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취지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의 인력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사를 담당했던 1심 검사나 2심 검사가 의견서 제출 등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시다만 예컨대 대법원에서 공개 변론이 열릴 경우에는 대검찰청 검사인 공판송무부장이 대법정에 출석을 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심급에 맞는 검찰 활동을, 공소유지 활동을 해 왔던 측면이 있습니다. 즉 이럴 때 기존의 대공소청에 해당하는 개념의 공소청과 전체 조직의 공소청의 개념이 동일하게 되면 좀 상당한 혼란과 오해가 야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토론을 하고 아직 뒤에 할 게 많으니까요 하면서 또 필요하면 더 말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2조와 3조를 저희가 논의한 것이고, 이제 4조, 사실 4조가 더 말씀하실 게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4조(검사의 직무)와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있

으시면 토론하는데 그 전에 이것도 먼저 법무부 의견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정부안에서 조금 수정된 게 있지요. 2호 같은 경우에는 ‘영장 청구·집행 지휘’였는데 그거를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수정을 했고, 그다음에 원래 4호에 있던 ‘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은 삭제했습니다. 그다음에 7호에서는 ‘1호에서 6호까지의 범죄수익환수’ 등등 해서 뒤의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규정된’, ‘법령’을 ‘법률’로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8호도 마찬가지로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그러니까 이것도 ‘법령’을 ‘법률’로 수정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부터 의견 말씀 주십시오.

○**법무부차관 이진수** 먼저 2호 영장 집행 지휘 삭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장 집행 지휘는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 행정부에 소속하는 검사가 그 집행을 지휘하는 내용으로서 그 본질이 재판의 집행 지휘이기 때문에 집행 지휘권을 삭제하는 것은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현실에서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 집행 지휘가, 그런 일이 극히 적긴 하겠지만 발부된 영장이 오류가 있는 경우들도 있고 예컨대 구금·인치 장소나 그 영장이 발부되었는데 그사이에 인권침해 여부가 문제가 된 사례 등 집행 단계에서 검토해야 될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한 신병 관련된 영장 같은 경우에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컨대 이미 신병이 잡혀 있거나 할 경우에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인권침해적 요소를 방지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검사의 권한의 확대와는 관계없이 적정한 영장의 집행 지휘라는 측면에서, 또한 삼권분립상 사법부에서 발부한 영장에 대한 집행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부에 속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영장 집행 부분은 남겨 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법무부의 의견이고요.

두 번째로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부분은 기존에 있었던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 부분이 변경되게 된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사경과 일반 사법경찰관리와의 차이, 특성을 좀 감안하셔서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에 대해서는 협의·지원으로 하되 특별사법경찰관리 같은 경우에는 협조·감독 등으로 검사와의 협조와 감독을 좀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분해서 실시하는 것이 조금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위원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특사경이 지금 현재 한 2만 명 되는데요. 1년 미만 근무자가 50%, 3년 미만 근무자가 80%고 기본적으로 특사경은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로서 사법절차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아무래도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과거에는 수사지휘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검사의 지휘가 이루어졌었습니다만 이것을 이와 같이 개정하신다고 하더라도 특사경에 대해서는 일반 사법경찰관리와는 다르게 검사가 인권침해적 요소를 방지하고 효율적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또 하나의 틀이 마련돼야 된다는 의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구분해서 실시하는 방안을 좀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7호·8호에 규정된 과거의 ‘법령’을 ‘법률’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토론에 앞서서 제가 먼저 하나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장 집행 지휘와 관련해서는 재판의 집행 지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본질이? 그런데 5호 ‘재판 집행 지휘·감독’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영장 집행 지휘는 검찰청법에는 없고 형사소송법에 있는 규정을 가지고 하고 있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니까 여기에는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만 있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 지휘가 반드시 필요할지 여부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때 논의를 하면 될 것 같고, 만약에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에도 이게 빠졌더라도 지금 5호에 의해서 재판 집행 지휘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과 법원행정처 차장님도 그것에 대한 입장 한번 같이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이 의견을 말씀드렸던 것은 기존에는 검찰사무에 수사사무가 들어갔었기 때문에 영장에 관한 집행 부분도 그 일환으로 해석을 해서 별문제가 없었다고 봤습니다만 수사사무를 삭제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대한 집행,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영역이라고 봐서 그 영장 집행이라고 하는 부분을 넣었던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5호 ‘재판 집행 지휘·감독’ 관련해서는 영장 단계가 대부분 재판 단계보다는 수사 단계에서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영장 집행이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조금 더 성안의 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차장님.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중**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논의되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도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는 작용 또한 재판이라고 보기 때문에 5호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재판’ 다음에 ‘(영장을 포함한다)’ 정도 하면 더 명확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이어서 이 조항 전체적인 의견을 드리면 7호, 8호 부분은 종전에 저희가 수정의견을 드렸던 부분에 따라 수정된 것으로 보여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위원님.

○**나경원 위원** 헌법상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을 준 것은 단순한 절차적인 규정이 아니라 인신보호라든지 인권보호 측면에서의 권한을 준 것 아닙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나경원 위원** 그리고 이와 유사한 헌법재판소 결정도 있지요, 2011년에?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나경원 위원** 그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단순한 절차적·형식적 규정이 아니다 이런 결론이 되어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본다면 영장의 집행에 관해서도 당연히 검사에게, 영장 청구라는 헌법상의 영장청구권을 실질적으로 해석한다면 넓게 해석하는 것이 맞고, 그런 면에서 지금 법무부나 법원의 의견처럼 저희가 집행에 관한 부분을 포함시키는 것이 헌법상의 영장청구권의 취지에 맞는 법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소송법에 이미 수사권이 박탈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으로도 맞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조배숙 위원님.

○조배숙 위원 지금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 삭제한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일반 사법경찰관리하고 특사경은 좀 별도로 해서, 추가로 이 부분을 분리해서 규정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일선의 특사경은 행정공무원에게 특별히 어떤 영역에 대해서 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을 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법률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 수사하게 되면 무죄가 나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수사하는 과정상 이분들이 자기가 수사권이 있다 해 가지고 어떤 때 보면 과도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인권침해 요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같이 수사지휘는 못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한 협조나 감독 이런 것은 분명히 좀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것은 국민을 위해서입니다. 국민을 위해서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또 의문이 있는데, 지금 여기 4조 7호나 8호에 보면 ‘법률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법률이 아니고 시행령으로 규정된 검사의 직무수행 및 권한 이 사항에 관한 것은 어떻게 되지요? 그것은 잘못하면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나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런 점이 좀 우려되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시행령에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시행령이 몇 개 되지 않고요 대부분 법률에 위임 근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로 규정하더라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규택 위원님.

○곽규택 위원 그냥 간단하게 의견만 말씀드리면, 법원행정처 입장이나 법무부 입장을 명시해 주는 게 어떤가 싶어요. ‘이것 외에 영장 청구 및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든지 5호에 ‘재판 및 영장 집행 지휘·감독’이라고 하든지 그것은 그렇게 넣어서 명확하게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3호에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와의 협조·감독’…… 감독이라 하셨나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감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 정도 문구는 넣어 줘야, 사법경찰관리의 일반 사경에 대한 부분과 특사경에 대한 부분은 차이가 있다 그런 것을 조금 명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특사경 부분은 많은 위원님들도 말씀 주시고 법무부에서도 말씀 주셨는데 특사경법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 부분을 개정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검사와의 관계를 정부도 협조 및 감독 관계로 상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개정할 때 여기가 같이 정리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특사경법에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일단 범죄수사와 관련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은 특사경이 포함되는 것이니까 이 정도

개념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저도 드리면서 토론을 더 이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성윤 위원님.

○**이성윤 위원** 차관님, 종래에는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발부가 될 경우에 검사가 집행지휘란에 도장을 찍어서 집행 지휘하지 않습니까? 그런 권한을 갖게 된 것은 검사가 모든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다만 검사가 경찰 수사에 대해서 이차적으로 수행한다 이런 의미가 있었고 그다음에 검사가 수사를 지휘한다는 관념 때문에 그런 영장을 집행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만약에 검사가 수사를 일체 할 수 없다면 법원의 영장 발부에 대해서 집행 지휘를 누가 해야 됩니까? 그다음에 검사의 영장 집행 지휘가 없어도 영장 집행이 안 되는 겁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기본적으로 기존에는 검사의 영장 집행을 전제로 해서 검사의 집행 지휘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검찰청 공무원 내지는 경찰관들이 그 영장을 집행해 왔던 것이었고요.

○**이성윤 위원** 아니, 그 집행 지휘의 권한은 수사권 아닙니까, 수사지휘권?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 부분은……

○**이성윤 위원** 그런데 그것이 폐지된 상황에서 검사가 지휘 안 하면 그 영장은 집행 안 되는 겁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러니까 집행에 관해서 법률전문가인 검사의 집행 지휘가 저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예컨대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집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와 같은 부분……

○**이성윤 위원** 아니, 그것은 극단적인 예고요.

영장 집행 지휘가 없으면 영장 집행이 안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법무부차관 이진수** 집행 지휘에 관해서 검사의 지휘가 필요하다는 게 의견이고요. 검사의 지휘가 없게 되면……

○**이성윤 위원** 지휘가 없으면…… 아니, 제가 묻는 말은 영장의 집행 지휘가 없으면, 검사 지휘가 없으면 영장 집행이 안 되는 겁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없게 되면 그 집행 지휘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법부에서 담당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은 삼권분립상 맞지 않는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윤 위원** 아니, 수사의 개시 및 착수를 경찰이 할 수 있는데 경찰이 영장을 받으면 그 영장 집행이 안 된다는 근거가 됩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것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에 따라서 지금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 집행 지휘라는 걸 통해서 사법경찰관들이……

○**이성윤 위원** 그것은 수사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게 반드시 직접수사권을 전제로 한다고는 해석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성윤 위원** 수사권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 지휘도 하는 거지요. 체포하라고 지시하는

것과 똑같은 거지요.

○조배숙 위원 그러니까 경찰이 집행 지휘하라는 거예요?

○이성윤 위원 당연히 영장 발부는 집행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에 보면 이 영장은 5일이 지나지 않으면 집행하지 못한다, 착수하지 못한다 돼 있어요.

○조배숙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성윤 위원 그래서 다 돼 있는 겁니다.

○조배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찰이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까? 검찰이 안 해도 된다는 겁니까?

○이성윤 위원 여기다 넣을 필요 없다 그 말씀입니다.

○조배숙 위원 그것은 아니지.

○이성윤 위원 그리고 7호와 8호 보면, 7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직무와 범죄수익환수, 국제형사사법공조 등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규정된 사항’, 8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요. 원래 저희가 받은 수정안에는 ‘법률에 따른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런 규정이 들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법률을 빼는 겁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이성윤 위원 수정안 7호 중에 ‘법률에 따른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된 사항’ 이렇게 했었는데 이때 ‘공조 등 검사의 직무를’ 이렇게 바꾸는 거지요?

○소위원장 김용민 맞습니다. ‘국제형사사법공조 등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규정된 사항’으로 이렇게……

○법무부차관 이진수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사법경찰직무법, 즉 특사경법이 이와 같이 되면 앞으로는 많은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사경 제도 관련해서요.

○소위원장 김용민 개정할 생각입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런데 특사경 제도가 과거에는 검사의 수사지휘를 통해서 수사사무에 대해서 특사경으로 지정된 공무원이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협의·지원 등의 용어로 바뀌게 되면 예컨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수사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누구의 지휘·감독을 받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해 봤을 때 이 수사사무는 특사경으로 지명받는 해당 담당 공무원이 수사를 하는 것인데요. 과거에는 검사가 지휘를 했는데 검사가 없어지게 된다면 결국 그 기관의 상급자들이 수사업무에 대해서 지휘를 하게 되는 형태로 상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수사업무가 원활하게 잘되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여러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누가 지휘권자이냐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상당히…… 앞으로 검토와 제도가 잘 설계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협조·감독이라는 용어를 꼭 분리해서 규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데 바는 이와 같이 공소청법에서 검사의 직무에 대해서 협의·지원으로 규정을 해 버리시면 그 이후에 특사경법, 사법경찰직무법에서 개정을 할 때에도 저희가 이 규정에 따라서

제도를 설계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수사지휘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협조·감독 등으로 좀 분리해서 규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더 논의를 해 보기로 하고요.

헌법 12조 3항에 보면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영장주의가 규정돼 있지요? 여기에서 영장을 집행할 때에도 검사의 지휘를 받으라는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헌법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차장님, 어떻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중 헌법에는 없지만 형소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렇지요? 그러니까 영장 집행 지휘가 영장청구권에 관련된 헌법에 정해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는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져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조배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검사가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 집행 지휘하는 것이 헌법상에는 규정이 안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물론 헌법상에는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될 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는 그 부분은, 그 당시 경찰도 청구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검사가 하라는 얘기는 그만큼 인권에 대해서 존중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미 수사권은 다 없지만 일단은 헌법상에 검사가 신청해서 하도록 한 이유는 그 기본적인 원리가 인권입니다. 인권에 대한 보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취지를 좀 살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자꾸 이런 것까지도 그냥 커트, 커트, 커트 할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인권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이 간섭하는 게 인권보호를 위해서 좋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지금 4조까지 토론을 진행한 것으로 하고요.

회의 진행한 지 한 2시간이 지났으니 잠시 정회를 했다가 화장실도 좀 다녀오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용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4조까지 심사를 했습니다. 5조부터 심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5조는 권한남용 금지라 이 부분은 아마 위원님들도 대부분 특별한 이견 없으시지요? 이견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6조(공소청의 장 등)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 이게 핵심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특별히 없으면 이 부분도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7조(검사사무에 관한 지휘·감독), 이 부분은 ‘검사는 검사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지휘·감독을 받는다’라고 해서 상급자를 법률에 따라 지휘·감독을 받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이걸 지금 국가공무원법도 이렇게 개정이 되고 있지요. 그 취지에 맞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견 없으시면 이것도 넘어갈까요?

○**곽규택 위원** 이견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말씀하십시오.

○**곽규택 위원** 7조가 원래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이라고 돼 있었는데, 지금 ‘법률에 따라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돼 있는데 이게 누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인지 전혀 명시가 없는 거예요.

법무부차관님, 이에 대한 의견 없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이 점에 대해서는 법률로 변경하신 취지가 어떤 취지인지 저희가 명확한……. 검사에 대해서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동일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이와 같은 변경을 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른 지휘·감독의 그 법률이 공소청법을 의미한다고 할 때에는 그 내용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좀 있어서 사실 조문 형식으로는 상급자의 지휘·감독이, 원안이 조금 더 현실에 맞는 조항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국회에서 결정하실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11조에 있잖아요, 11조 2항. 각급 공소청별로 상급자의, 장의 지휘·감독 조항들이 다 들어 있거든요.

○**곽규택 위원** 아니, 그러면 7조에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서 ‘소속 상급자’라는 말을 빼 버리고 ‘법률에 따라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해 버리면 8조가 필요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법에 ‘검사는 검사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이렇게 해 놔야지 ‘법률에 따라 지휘·감독을 받는다’ 이러면 법률에 사법경찰이 검사를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면 사법경찰의 지휘·감독을 받는 거예요, 검사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법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면 검사가 법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되니까, 법률에 그렇게 규정을 하면?

검사사무에 관하여는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게 맞지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법률에 따라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 되는 거지 왜 굳이 소속 상급자라는 말을 생략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 소속 상급자라는 말을 빼 버리면 8조의 이의제기 할 때도 이의제기 할 상대방이 없는데 무슨 이의제기를 합니까. 그러면 8조도 다 생략해 버려야지.

11조 이하에 각 공소청, 차장검사 두면서 지휘·감독 규정을 둔다고 하더라도 그 앞에 일반 규정하다가 7조의 취지를 둔 것은 검사사무에 관해서는 다른 사람이 아닌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만 받는다는 것을 검사의 업무 특성상 규정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법률에 따라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하든지 ‘법률에 따라’라는 말이, 그런 법률이 없으면 그냥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해 놓고 그럴 경우에 이의제

기관이 있다…… 이것은 8조하고 세트로는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라고 명시해 놓아야 한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 일단은 법률에 따라 하는 것에 공소청법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공소청법에 공소청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휘·감독 권한을 규정해 놔줍니다. 그러니까 7조는 공소청법을 근거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검사는 법률에 따라서 지휘·감독을 받는 것이 맞고.

다만 7조를 ‘소속 상급자의 명에 따라’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과거에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우려 섞인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규정들에서 소속 상급자, 공소청장이라든가 기타 광역공소청장이라든가 아니면 부장검사 등등의 지휘·감독 부분을 넣어 놔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또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조배숙 위원님.

○조배숙 위원 법이라고 하는 건 좀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도 맨 처음에 이 7조를 보면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했습니다. ‘법률에 따라’ 그러면 지금 박은정 위원님의 발언에 따르면 이 법의 요소요소에 검사가 소속 부장검사라 할지 그다음에 그 이상의 상급자의 지시를 받게 돼 있는 조문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해결되니까 무관하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수록 여기다가 일반적으로 해 놓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겠어요?

저는 ‘검사는 검사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이걸 보면서 누구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인지,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은 ‘검사가 누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이게 원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완결적인 문장 아닌가요? 그런데 그냥 ‘법률에 따라’ 이렇게 하면, 그리고 또 그 법률이 바로 여기 이 공소청법의 요소요소에 지휘·감독에 관한 글귀가 있다 하니, 그것도 소속 상급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또 토론하실 위원님.

○서영교 위원 제가……

○소위원장 김용민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데 검사사무에 관한 지휘·감독처럼 경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이라는 것도 있나요?

수석님, 그런 게 있나요? 경찰은 경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 이런 게 있나요?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보통은 국가공무원법 57조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이 규율에 따라서 저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예,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

○서영교 위원 더 센가?

○**박균택 위원** 검찰청법에 이게 있는 이유는 다른 행정기관과 달리 검사가 자기의 이름으로 일을 하는 단독 관청이다 보니까 통제의 근거를 좀 더 둔 경우가 아닐까 하고 짐작이 됩니다.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검사는 한 분 한 분이 다 독립성이 있어서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검찰청법에 지휘·감독 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의 독립성이 있으면 하급 검사도 독립성이 있는 거고 상급 검사도 독립성이 있는 거잖아요.

○**박균택 위원** 독립성이 아니고 단독 관청입니다.

○**서영교 위원** 금방 독립성이라고 얘기하신……

○**박균택 위원** 아마 단독의 의미로 표현을 사용한 것 같은데 독립이 아닌 단독.

○**서영교 위원** 그러면 단독 관청이니 상급 관청의 지휘를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단독 관청이면 단독 관청에서 일이 끝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잘 몰라서 하는데……

○**소위원장 김용민** 아주 중요한 모순점을 지적하신 겁니다, 그게.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단독 관청이라고 한다면 단독 관청에서 일이 끝나야 하는 건데 여기에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고 하면 위에 있는 단독 관청 밑에 있는 단독 관청 이런 데 약간의 모순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상급자 이런 게 안 있어도 상급자의 지휘를 받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공무원은 상급자에 따라야 된다, 그렇지만 그 상급자가 직권을 남용하거나 잘못된 명령을 내리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한다라고 밑에 넣어 놓은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기존에 수사를 하거나 이럴 때 들어가는 말이었지 않았을까.

이게 공소를 하고 공소를 유지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상급자와 함께 소통하고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고 지휘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은 위에서 밑에다가 ‘내 명령대로 니가 수사해야만 해’ 이런 것을 막으려고 넣어 놓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선 그래서 나온 이야기인데 단독 관청이면서 또 지휘가 있어야 하고 이런 모순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차관님께서……

그러니까 전체가 그렇게 하나로 가고 소통도 되고, 그래서 ‘지금 내가 기소하는 게 맞습니까?’라고 서로 소통도 해 보는 건 필요하잖아요. 단독 관청이면 거기서 끝내야 되는 건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러니까 검사가 단독 관청이라는 의미는 그 검사의 책임하에 기소 등의 결정을 하게 되고 그 책임이 온전히 검사가 결정한다는 의미에서의 단독 관청이고요. 실무에 있어서는 부장검사건 차장검사건 그 사건 관련해서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서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고, 검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완벽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소속 부장이라든지 차장의 어떤 지도 그다음에 업무적인 지시 이런 부분들이 수반되어야 국민의 인권침해적이라든지 사건 결정의 오류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차관님은 계속 인권침해적인 요소, 당연하지요.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논의의 시작은 검

사가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엄청 많았기 때문에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영역을 분리하자라고 하는 걸로 되는 건데 계속 검사가 지휘를 해 줘야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깐…… 그것 동의해요. 전체가 다 거르고 나뉘지고 하지만 침해가 여기서 많이 있었으니까 이제 잘라 내고 그 침해적인 요소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심의위원회 등 상관에 의해서 그것을 정리시켜 줘라 하고 잘라 낸 거잖아요. 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계속하시면 안 되는 상황이다, 우리는 그걸 이해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은 ‘아니, 왜 위에서 아래를 지휘하고 감독해?’, 이게 예민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법률에 있는 것만 하지 너 과하게 하지 마’ 이런 취지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같이 잘 살리는 의미가 필요하다.

저는 판규택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서로 소통도 해야 되고 그게 잘못됐으면 이의신청도 가능하고, 이 말도 맞는데 소통이라고 하는 걸로 인해서 완전히 제압해 버리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 측면에서 2개가 같이 의미가 있어 줘야 되는 거다.

그래서 ‘법률에 따라’라고 ‘너 법률에 따른 것을 넘어서면 안 돼’라고 지정해 놓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소위원장 김용민 법원행정처 차장님, 판사들은 다 독립된 일종의 독립관청이잖아요, 판사야말로.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중 예, 독립된 기관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판사들이 재판과 관련해서 상급자의 지휘를 받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중 그렇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지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중 지휘를 할 수도 없고 지휘를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직권남용죄로 처벌받겠지요. 이제는 법왜곡죄로 처벌받겠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중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서영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모순점이 바로 이 부분에 있는 것인데, 검사도 준사법기관이라고 부르는 독립된 관청이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기소업무와 공판업무를 담당하는 공소기관으로 탈바꿈하면 어떻게 보면 그동안 검사들이 얘기했던 준사법기관성이 더 강조될 수도 있겠지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상급자의 지휘를 받는 것은 오히려 지금 법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예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해당 검찰청의 검사장만 검사인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은 개별 검사로서 자기의 이름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검사장을 통해서만 모든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맞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물론 지금 우리가 그 체제 자체를 다 바꾸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이런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여전히 있는 것이고 법원과 검찰은 늘 같다, 판사와 검사는 늘 같다고 얘기해 왔으면서 제일 중요한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다른 길을 택하고 있어요. 이 문제의식을 지금 서영교 위원님께서 명확하게 지적하신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제가 질문 좀 하고 한꺼번에 대답해 주세요.

○소위원장 김용민 나경원 위원님.

○나경원 위원 저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들을 말씀하시는데, 법원은 헌법에도 있는 원칙에 따라서 독립해서 재판을 하고 그 재판이 삼심제에 의해서 걸리지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석과 판단이 걸러지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이 이렇게 되면, 검찰이 기소한 게 삼심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그래서 검찰은 상명하복이고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준사법기관이니까 독립해서 하라면 이것 완전히 중구난방 되는 것 아니에요? 피고인이나 피해자나 어느 검사에게 걸리냐에 따라서 복불복이 되면 그것이 법적인 정성이 있겠습니까?

저는 도대체, ‘검사를 개별적으로 마음대로 해라’ 이것은 한마디로 피해자 구제에도 맞지 않고……

○소위원장 김용민 검사를 못 믿으십니까? 검사를 좀 믿으십시오.

○나경원 위원 체계가 다른 거지요. 피해자 구제에도 맞지 않고 피고인들에게도…… 이게 법적 통일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 좀 제대로 잘 만들어 보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래요. 저희는 반대하지만 수사와 기소를 정 분리하겠다는 그 원칙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법적인 안정성 그리고 피고인·피해자에 대한 권익 보호 이런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해서 정합적으로 만들어 가야지 이렇게 법을 만들면 정말 나중에 후대에 계속 옥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정리를 해 보시지요.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이 부분도 지금 결론을 내기는 어려우니까 일단 다음으로 더 넘어가 볼까요.

7조·8조 같이 논의한 것으로 정리를 해도 되겠지요?

9조는 현재 있는 조항이고 10조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따로 안 계시지요, 9조·10조는?

○곽규택 위원 아니, 잠깐만요. 10조는 뭐를 바꾼 거예요? 국민윤리책에 나오는 말 같은 것을 10조에 넣어 놓은 것 아닙니까?

○나경원 위원 아니, 법무부장관이 일반적으로 지금 검사를 지휘·감독한다고요?

○소위원장 김용민 지금 현행 검찰청법에 있잖아요.

○곽규택 위원 현행과 같습니다.

○나경원 위원 아니, 지금 검찰총장 지휘·감독해도 각 공소청이 알아서 하는 것으로 바꾼다면서요? 그러면 어떻게 지휘·감독권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이성윤 위원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거니까요.

○나경원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법을 바꿔서 공소청별로 알아서 판단하게 만드는 구조로 바꾸신다면서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지휘·감독할 수 있나요?

○이성윤 위원 일반적으로 감독하잖아요.

○나경원 위원 아니, 일반적인 것 말고 구체적인 사건.

○조배숙 위원 아까 얘기하기를 검사가 단독 관청이니까 검사가 개별적으로 알아서 하라는 것 아니에요, 간섭받지 않고. 아까 그랬잖아요. 논리가 서로 안 맞는 것 같아요.

○나경원 위원 논리가 안 맞아요.

○소위원장 김용민 그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였잖아요, 그래서 법도 그 취지하에 돼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휘·감독이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법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 그 취지가 반영된 것이지요. 단독 관청이지만 사실상 행정공무원으로서 상급자의 지휘를 받는 것을 더 강조한 법인 거지요. 기존 검찰청법도 그래 왔고요.

○나경원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을 고치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 법이 법으로서 정합성을 갖는다는 말씀입니다.

○곽규택 위원 하나 확인할게요.

차관님, 지금 검찰청법 7조의2(검사 직무의 위임·이전 및 승계)라는 조항이 있잖아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곽규택 위원 지금 사건 배당도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하는 건데 이 7조의2를 이 공소청법에서는 통째로 뺐어요. 이게 대체되는 조항이 없는 것 같아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해당되는 조항이 지금 현재 정부안 37조.

○곽규택 위원 37조로 간 거예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토론 더 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곽규택 위원 읽어 보고 확인하고 있는 중인데, 됐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9조·10조와 관련해서도 지금 의견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는 2장 공소청으로 넘어가는데 이건 기존 검찰청법이랑 거의 유사하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2장 자체를 놓고 토론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구체적인 11조·12조 이렇게 따질 건 아니고 2장 공소청, 그러니까 기존 대검찰청인데 2장 공소청에 대해서 전체를 놓고 토론하시면 좋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명칭만 바뀐 거잖아요.

○소위원장 김용민 사실상 그렇지요.

○곽규택 위원 논의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김용민 박은정 위원님 토론하시겠습니까?

○박은정 위원 매우 유감인 게 공소청으로 바뀌는데 검찰총장 명칭을 그대로 고수하는 것이 맞나. 그리고 검찰총장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헌법기관이어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기관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설치 근거와 중요한 직무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헌법기관입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이라는 규정은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조직의 장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게 되면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당연히 바꿔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공소청으로 바꾸면서 그 수장을 검찰총장으로 그대로 두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

○법무부차관 이진수 아닙니다. 다른 의견 때문에 발언 기회 주시면, 다른 사항 때문에.....

○소위원장 김용민 다른 사항이요? 말씀하십시오.

○법무부차관 이진수 아까 제가 공소청 명칭 관련해서 조직법적인 부분과 대공소청 부

분이 혼재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1조 2항을 보시면 ‘검찰총장은 공소청의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사무를 총괄하며 공소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소청의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 대공소청인지 아니면 전체 검찰 조직의 공소청인지가 해석이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공소청의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등으로 명기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이 부분은 더 의견이 없으시면……

○곽규택 위원 아니, 그것은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네요. 지금 검찰청법에 보면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대검찰청과 검찰청을 명확하게 구분해 가지고 뒤에 나오는 검찰청은 전체 검찰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것으로 규정이 돼 있던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11조 2항을 보면 위에 나오는 공소청과 밑에 나오는 공소청의 의미가 분명히 다른데 대공소청이라는 말을 사용을 안 하기로 하는 바람에 이런 혼란이 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대공소청이라고 기관의 고유명사처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차관님 말씀처럼…… 뒤에 나오는 공소청에는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이걸 다 넣어야 된다는 말씀 아니에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을 다 넣어야 합니다.

○곽규택 위원 그러니까 이런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11조 2항뿐만 아니고 다른 법률에도 이것을 손 봐야 될 데가 분명히 많지 않을까 싶은데 참 우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교 위원 잘 찾아내셨네요.

○곽규택 위원 아니, 설명하니까 그렇지.

○소위원장 김용민 이것은 지금 바로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토론을 듣고 나중에 하는 겁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한말씀만 더 드리면 13조도 조금 이상한 면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13조?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공소청 검사. ‘공소청에 공소청 검사를 둔다’ 이 문언 자체가, 공소청에 공소청 검사를 둔다는 것이……

○나경원 위원 그러니까 대공소청이라는 말을 빼려니까 너무 웃긴 것 같아.

○법무부차관 이진수 대공소청이라고 하는 부분이 빠지면서 발생하는 문제로 생각됩니다.

○박은정 위원 13조 규정은 공소청에 검사를 임명할 수 있는, 인사 발령을 낼 수 있는 근거 규정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혼란은 없어 보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니까 11조 2항에서 공소청 및 각급 공소청 이렇게 그 부분은 규정하면 되겠지요. 그러면 2장에 대한 토론은 이 정도로 하고.

3장 광역공소청에 대한 토론으로 넘어가는데요 특징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아까 18조 3항에서 ‘행정 및 일반’이라는 표현을 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21조(사건심의위원회)를 법에 두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포함해서 3장에

대한 토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곽규택 위원** 3장은 거의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소위원장 김용민** 예, 아까 사건심의위원회가 특징적인……

조배숙 위원님.

○**조배숙 위원** 21조에 보니까 무슨 심의위원회라는 걸 두는데 우선 심의위원회 2항에 보면 ‘50명 이상 2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리고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그랬는데 최대 200명까지 되는데 200명에서 선거하나요?

○**소위원장 김용민** 아니요, 6항에……

○**조배숙 위원** 3항에 보세요, 3항에.

○**소위원장 김용민** 이게 인재 풀인 것이고 6항에 보면 회의 시마다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15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구성을 하는데 위원장을 심의위원 중에서 선출한대요.

그다음에 8항에 보면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존중하여야 한다’ 하는데 심의위원회 의견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검사가 기소편의주의잖아요. 수사는 못 해도 기소하는 것은 기소편의주의인데, 이것은 검사가 아닌 순수한 어떤 외부 인사인데요 그 인사의 심의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이것하고 충돌되는 게 아닌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질문하신 거지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박은정 위원** 제가 질문할게요.

차관님, 지금 수심위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 위원** ‘존중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조배숙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 기속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와 같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검사가 결정함에 있어서 그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라는 표현으로 해서 그 결과를 중하게 감안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조문안으로 구성했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러니까 기속력은 없다 이거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조배숙 위원** 기속력은 없고. 그러면 위원장을 선출한다고 그러는데 50~200명이니까 한 150명이라고 치면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고 그러면 선거를 하는 형태가 되나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200여 명은 위원회 위원들의 전체 풀이고요 그 위원회가 개최될 때 15명의 위원을 선발하게 되고 그 열다섯 분 중에서 위원들께서 호선하는 형태로 위원장이 선출됩니다.

○**곽규택 위원** 차관님, 수사심의위원회 규정이 지금 규정하고 바뀐 부분이 뭐가 있나요, 21조(사건심의위원회)가?

○**법무부차관 이진수** 인원 숫자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인 틀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곽규택 위원** 인원 숫자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지요? 수사심의위원회 규정은 어느

법에 두고 있나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것은 법률이 아니고 대검찰청 예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지금 차관님께서서는 심의위원회가 150명이었는데 거기서 위원장 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이건 인재 풀이고 거기서 15명을 추려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그때 위원장을 뽑는다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6항에 보면, 조금 문안을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3항 자체를 그렇게 하든가, 심의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15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고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무작위…… 이것 어떻게 하나요,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박균택 위원** 이 위원장은 전체위 위원장인 걸로 해석을 해야 괜찮을 것 같은데요.

○**조배숙 위원** 그러면 차관님의 설명하고는 좀 다르지요.

○**곽규택 위원** 그러니까 순서상으로도 이것은 전체위원장을 말하는 거……

○**조배숙 위원** 그러면 이 200명에 대한 위원장입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러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선출을 하는지.

○**법무부차관 이진수** 사실 이 부분이 정부안에서는요 광역공소청장이 지명하는 형태로 성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배숙 위원** 지명한다고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곽규택 위원** 이게 우리가 그냥 규정에 있을 때하고 법에 올릴 때하고는 조금 더 정치하게 봐야 되는데 사실 전체적인 법조문의 분량을 보더라도 21조가 너무 생뚱맞은 법조항인 것 같아요. 이걸 굳이 공소청법에 이렇게 법률사항으로 규정을 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 공소청법의 핵심은 검사의 수사권 박탈 아닙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건 좋은데 21조 같은 조항을 왜 여기다가 이렇게 법률사항으로 넣어 가지고…… 이것 한 이 삼십 년 후에 법 고칠 때 ‘그때 만들었던 국회의원들 누구야?’ 다 볼 것 같거든요.

○**박은정 위원** 아니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지금 계속 수사권이 문제가 되고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으로 우리가 바꾸는데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논쟁적으로, 너무나 당연히 폐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논쟁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그다음 단계인, 그러니까 공소청 검사의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그것이 검찰개혁의 굉장히 중요한 개혁 의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안 되면서 사실은 이것이 지금 현재 검찰에서 하고 있는 민주적인 통제 방안, 그러니까 시민이 참여하는, 외부인이 참여하는 기소권의 통제, 영장청구권과 공소제기권, 상소권에 대한 통제 방안이거든요. 이게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안이지요. 그러니까 배심원 제도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법에는 없는 건데 실질적으로 검사의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굉장히 깊은 고민에서 법률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규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그 부분은 전문위원께서 내용을 조금 다듬

어 보기로 했으니까 한번 그 얘기를 들어 보고 정리를 한번 해 보고요. 일단 문제 지적하신 것을 전제로 해서 다음 토론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토론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서영교 위원 의견 조금만 제시해 보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그냥 넘어가서 지금 정리가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김용민 지적하신 부분들 중에서 아까 수정하기로 했던 부분과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문구 정리 같은 것들은 다시 해 보기로 했으니까……

○서영교 위원 ‘검사는 심의위원회 심의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이게 수사심의위원회 때 있었던 내용이라는 거잖아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우선 공소청은 수사권 없어졌잖아요. 그렇지요? 수사권은 없어지고 기소와 공소유지만이 있는 것이잖아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수사개시권이 없어졌습니다.

○서영교 위원 수사개시권이 없어지고. 그러면 중대범죄수사청도 그렇고 국수본도 그렇고, 국수본에도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제가 확인했는데 있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게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심의위원회가 있고. 지금 말씀처럼 경찰이 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검찰이 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경찰이 못 하는 걸 검찰이 거르기도 해 왔고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의견들에. 그러면 경찰이 잘못하는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저는 그 심의위원회를 완전히 보강해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물어 두거나 덮어 두거나 그리고 과하게 송치하거나 과하게 수사하거나 이러면 국수본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있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이것 제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국수본이나 중대범죄수사청에 있는 심의위원회 권한이 강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사의 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수사기관, 이게 다 권력기관이잖아요. 그러면 기소와 공소유지를 중점적으로 담당하지만 여기에 잘못된 것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몇 가지 수사심의위원회, 검찰에 올렸더니 권고는 했지만 하나도 들어 준 적이 없어요, 지난번에 할 때. 우리가 그때 구속취소였나 심의위원회 좀 해 봐라고도 하고 그랬는데 심의위원회의 권고 사항이라 듣지를 않더라고요.

저는 지금 중요한 것은 개혁하는 과정 속에서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도 과하거나 잘못되거나 아니면 제대로 하지 않거나 이러면 심의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든 검찰을 한 번씩 걸러 주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존중만으로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오히려 저는 듭니다.

그래서 경찰이나 이런 쪽은 수사를 달리하면 그 수사관을 교체하는 권한도 심의위원회에 주자 그리고 징계하는 권한도 심의위원회에 주자,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중대범죄수사청과 이쪽의 심의위원회에 수사를 잘못하면 수사관을 교체하고 징계하는 권한도 두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존중만으로 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논의를 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심의위원회 구성을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재 풀이 있는데 그냥 외부에 있는 사람 차원이 아니라 좀 더 국무총리실의 누구라든지, 그러니까 이 심의위원회는 검사, 판사 그리고 수사를 했던 경찰, 일반 시민단체 그리고 외부 인사, 전문가, 학계 그러면서도 정부에 있는 관계자들도 들어가서 좀 책임감 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향후 다시 구성을 하겠지만 그런 제안을 하면서 이게 존중만으로 되겠는가 이런 의견을 한번 제안해 봅니다.

○**나경원 위원** 제가 의견 좀 얘기할까요?

○**소위원장 김용민** 예.

○**나경원 위원** 이거 지금 완전히 공소청을 사건심의위원회가 주물럭 하라는 것 아닙니까? 이거 인민재판이 아니라 인민검찰입니까? 아니,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 보면 기존 질서에서 훈련받고 전문가로 한 사람들은 전부 부정하고 시민단체가 와서 다 이거 해라, 그러면 전문가는 왜 키웁니까? 모든 영역이 그렇지, 모든 영역이.

○**서영교 위원** 제가 금방 얘기했잖아요. 시민단체만이 아니라 전문가, 정부 관계자, 판사 다 들어가야 된다고.

○**나경원 위원** 아니, 사건심의위원회가 지금……

○**서영교 위원** 그래야 제대로 심의를 하지.

○**나경원 위원** 제가 얘기하고 있으니 다음에 발언권 얻고 하세요.

그러면 사건심의위원회가 지금 공소청장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됩니까, 마음에 안 들면 검사도 교체하고? 저는 수사·기소 분리가 아닌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기존 질서를 해체하는 것은 국민들한테 피해가 있다. 아니,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것이지 왜 갑자기…… 이거 그냥 인민재판하고 똑같은 형식이에요, 인민재판하고.

그리고 이걸 법에 규정하는 것하고 영예 규정하는 것하고 다른데 법으로 올리더니 이것을 지금 교체하는 것까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중수청법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존중한다라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굳이 법에 두는 것도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그러면 여기 위원장은 거의 모든 사건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위원장과 위원에 대한 자격요건도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써 가지고 앞으로 우리는 전문가가 필요 없고 전부 시민단체 빨리 만들어서 시민단체 되는 게 앞으로 모든 사회의 모든 업무를 관장할 수 있게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입법사항으로 하는 것부터 반대하고 여기서 추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빼야 될 것이 많다, 위원장과 위원의 자격 같은 것을 오히려 시행령으로 위임해 놓고 조금 더 구체화할 필요도 있다 이런 말씀들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위원장 선출 방식을 시행령으로 위임하자라는 말씀?

○**나경원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자격이라도 법조 경력 몇 년 이상이라든지 좀 이렇게 해야지 자꾸…… 또 이거 만들어 놓으면 좀 있으면 중수청법 따라서 검사 교체하는 권한 주자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징계권은 징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징계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서 해야지 무슨 사건심의위원회에서 교체·징계까지 한다면 저는……

○**소위원장 김용민** 여긴 그런 게 없는데……

○**나경원 위원** 아니, 앞으로 중수청이 그렇게 하니까, 그런 말씀들 하시니까요.

○**곽규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박은정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게 수사심의위원회에 있던 규정이…… 수사심의위원회가 생겼던 게 검사가 수사를 하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외부의 관여를 더 주는 그런 거였는데 지금 범죄수사에 관한 권한을 다 박탈하면서 수사심의위원회에 있던 규정은 공소청법에 가져온다? 이게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내용 성격상 공소청의 조직과 권한에 관한 규정을 하는 공소청법에 이런 사건심의위원회 규정을 둔다는 것도 조금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로 필요하다면 21조 1항 정도만 두고 나머지는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가지고 하는 게 맞지 21조 내용도 조금 이상할 뿐만 아니라 법의 성격하고도 전혀 안 맞는 규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위원** 그게 아니고 21조 이게, 사실은 사건심의위원회의 입법취지가 수사를 전제로 한 심의위원회라기보다는, 수심위는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만 필요한 것은, 김성훈 경호차장 영장 같은 경우에 검찰이, 공소청 검사가 영장을 계속해서 기각하고 수사를 방해한다 말이지요. 그런 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그리고 김건희 같은 경우에 어이없게 불기소한 사건들을 보다 시민들이, 국민들이 감시하고 불기소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동안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반성적 고려에서 이 법률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규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나경원 위원** 검사 출신 위원님들 좀 그때 잘하시지 그러셨어요.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나경원 위원** 저 조금 앞뒤가 안 맞아서……

○**소위원장 김용민** 예, 더 하실 겁니까?

○**나경원 위원** 미안합니다, 다시 거꾸로 가서.

11조에 ‘공소청에 검찰청장을 둔다’, 11조 2항에 ‘검찰총장은 공소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사사무를 총괄하며 공소청의 공무원 지휘·감독을 한다’ 이것은 공소청 전체를 말하는 건 맞나요?

○**소위원장 김용민** 아까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공소청 및 각급 공소청.

○**나경원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요?

○**소위원장 김용민** 예.

○**나경원 위원** 그러면 사무분담인가 그거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수정하기로 했나요? 지방공소청의…… 그게 몇 조지요, 37조?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없겠군요, 아까 그것 고치게 했으면.

○**박은정 위원** 예,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나경원 위원** 그러면 아까 그건 고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고등공소청까지는, 정확히는 광역공소청이지요, 이것까지는 토론을 이 정도로 하고 지방공소청 및 지청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또 이어 가겠습니다.

제4장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의견 주시는데 여기도 아까 마찬가지로

로 25조 3항에 ‘부장검사는 그 부의 사무를 처리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이 부분은 넘어갈까요?

○**곽규택 위원** 그 전하고 변동사항이 크게 없는 거지요?

○**소위원장 김용민** 예,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5장 검사 부분입니다.

5장 검사에서도 지금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기는 한데 그래도 보시고 의견 있으시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징적인 게 45조 검사의 징계에 징계처분으로 파면을 할 수 있는 것을 추가했습니다. 이게 하나 특징적인 것이고 나머지는 아마 기존 검찰청법이랑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고 있고, 51조 정치운동 금지 규정이 조금 더 강화했습니다.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공소청 검사에 그러면 지방공소청장은 직에 10년 이상 있던 사람들 이런 제안이 없는 건가요?

○**곽규택 위원** 몇 조?

○**나경원 위원** 29조.

원래 검찰청법하고 같나요? 그러니까 광역공소청장, 공소청 차장검사는 10년 이상의 그게 있어야 되는데 지방공소청장은 없어서, 공소청 차장검사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데 지방공소청장은 경력을 요구하지 않으면 앞뒤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은정 위원** 검찰청법에 그대로……

○**곽규택 위원** 원래 검찰청법에도 그건 없었던 것 같은데요.

○**나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검찰청법에 그렇다고 돼 있다고요?

○**곽규택 위원** 아니, 이게 지금 고검장급 검사를 자격을 둔 건데……

○**나경원 위원** 아니, 공소청 차장검사가 대검……

○**곽규택 위원** 대검 차장검사.

○**소위원장 김용민** 보통 그것을 3호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에서 정리를 하거든요, 대통령령으로.

○**나경원 위원** 그냥 대검 차장검사구나.

○**소위원장 김용민** 예, 보통 그렇게 합니다.

○**나경원 위원** 하도 법이 이상하니까 잘못 만들었을까 봐 자꾸 보는 거예요.

○**조배숙 위원** 자꾸 헛갈려요, 이게 대공소청이라는 말을 안 쓰니까.

○**나경원 위원** 그러니까, 헛갈리는 거예요, 중의적으로 되니까. 이걸 우리만 그렇게 인정하지 이거 밑에 가 가지고 헛갈리게 말을 하면 어떡해요? 이것을 좀 정리를 하세요. 대공소청을 쓰세요, ‘대, 고등, 지방’. 이거 진짜 이상해.

○**조배숙 위원** 왜냐하면 법문에 명확해야 되거든요. 자꾸 트라우마, 이상한 바이어스 돼 가지고 이것을 쓰는 것을 그렇게 무서워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수사권은 다 뺏어 갖고 그냥 ‘대’ 자 하나 붙이는 거, ‘고등’ 자 하나 붙이는 것을……

○**소위원장 김용민** 검찰청을 폐지까지 한 사람들이 이걸 무서워하겠습니까?

○**조배숙 위원** 그러면 왜 그러세요?

○**곽규택 위원** 아니, ‘대’ 자가 그렇게 싫으시면 다른 걸 쓰시든가.

○박은정 위원 아니, 행정 법안이니까 그런 거지요.

○소위원장 김용민 예, 일반 행정기관이랑 동일한 구조로 가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배숙 위원 아니, 그렇지만 지금 혼란스럽잖아요.

○소위원장 김용민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광역공소청 자체를 폐지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광역공소청 폐지 논의는 아주 오랫동안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광역공소청이 만약에 폐지가 된다면 공소청, 지방공소청이라는 2단계 구조가 딱 떨어지기 때문에 굳이 지금 이것을 대공소청으로 고칠 필요는 없다고는 보이는데 그래도 의견 충분히 주십시오.

○나경원 위원 아니, 왜 그게 딱 떨어지게 되는 겁니까?

아니, 옛날에는 지방검사들이 들어가는 것은 보통 수사 담당 검사들이 아마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고등재판에도.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고등검사가 고등재판을 했겠지요.

○박은정 위원 거의 안 하는……

○나경원 위원 아니, 직접 수사하는 검사.

○곽규택 위원 차관님, 지금 조문이 많기는 한데 차관님께서 수정이 필요하거나 의견이 있으신 부분은 없나요, 제4장 관련해 가지고?

○법무부차관 이진수 이 장 37조(검사 직무의 위임·이전 및 승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안에서는 지금 검찰총장과 각급 공소청장이 같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검찰총장이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빠지게 될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좀 우려돼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전국 검찰청 같은 경우에 지재권 사건 등 전문사건 이송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합수본 구성 등 집중수사, 그다음에 대형 참사 같은 경우에 전문수사팀 구성 등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검찰총장의 직무 이전·승계권이 근거 규정이 없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구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만 법무부장관께서 검찰총장을 지휘한 이후에 검찰총장이 여기에 대한 직무 이전·승계권이 없어 버리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이행 부분에 있어서도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원안대로 유지되는 부분을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37조 말씀하신 거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37조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이것은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의 결단입니다. 검찰총장에게 그 권한 주지 않겠다는 결단이니 입법적 결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그 결단이 뭐라고요?

○소위원장 김용민 입법적 결단입니다.

○조배숙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행정적인 것도 안 준 사람…… 그러면 누가 행사하나요? 이것을 조정을 누가 하지요? 행정적인 것을 어떻게……

○소위원장 김용민 지휘감독권, 전체 검사들에 대한 검사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아까 11조 2항에 넣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해결하면 되지 37조에서 굳이 넣을 필요는

없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입법적 결단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토론은 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말씀드리는데는 민주당에서는 그런 것을 결단을 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조배숙 위원 그러면 차관님, 어때요? 37조 1항에 ‘각급 공소청의 장’으로 돼 있는데 그것 플러스 ‘검찰총장 및 각급 공소청의 장’ 이렇게 하시자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김용민 소위원장님은 11조 2항에서 검찰총장에게 각급 공소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줬으니 그것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러니까 그게 각급 공소청의 장 관할 범위 내에 있는 일이라면 그 안에서 해결이 가능하겠습시다만 예컨대 전국적인 다단계 사건이 광주·부산·대구·강릉에서 발생했을 경우에 검찰총장이 그 부분을 서울에서 모아서 수사를 하도록, 검토해 가지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과 같은 경우에 마약합수본이 구성되어 있는데 마약사건 같은 경우에도 관할을 달리 해서 이와 같이 직무를 이전·승계토록 검찰총장이 지휘·감독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지휘를 하기 위해서는 검찰총장의 직무 이전·승계에 관한 권한이 남아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곽규택 위원 그것은 합리적이네요.

○조배숙 위원 글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박은정 위원 37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 우선 37조가 이렇게 규정이 된 이유는 윤석열 검찰에 대한 반성적인 고려 때문입니다.

○조배숙 위원 그만 좀 하세요. 뭐를 얼마나……

○박은정 위원 월성원전 모두 다 무죄가 났지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월성원전 사건을 대전에 있는 자신의 친윤 검사장에게 사건을 몰아줬습니다. 그리고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불법 출금 아니지요, 김학의 출금 사건에 대해서 그것이 안양지청 관할임에도 불구하고 수원지검으로 사건을 몰아줬습니다. 그 사건을 담당할 검사도 친윤 검사지요. 검찰총장이 검찰권을 이런 규정으로 어떻게 남용할 수 있는가를 보여 주는, 그래서 다시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같은 그런 검찰권 남용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지금 예를 드신 그런 전국적 관할에 관한 범죄에 대한 기소권을 만일에 공소청에서 공소청장이 지휘·감독해야 된다면 그것은 각급 공소청장들이 모여 가지고 전체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거나 예를 들면 훨씬 더 중요한 피해자가 있는, 혹은 중대한 피해 규모가 있는 곳으로 사건을 배정하거나 아니면 법무부에서 그것을 충분히 교통정리 할 수 있지 검찰총장이 제왕적으로 사건을 마음대로 관할을 정해 가지고 이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검찰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관할을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박균택 위원님.

○**박균택 위원** 차관님, 검찰총장의 직무 이전 그게 왜 어떤 경우에 필요하다는 것인지 피부로 조금 와닿는 사례를 하나만 얘기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검 내에서 보면 위임전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일선에서 올라오는 모든 일을 총장이 다 처리할 수가 없으니 과장급이 결재하고 부장급이 결재하고 차장이 결정하는 것 또는 일반 직원들의 사무 같으면 대검 사무국에서 또는 집행과에서 전결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수사와 관련해서 포괄적인 지휘권을 양도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직무 이전·승계권 관련해서요?

○**박균택 위원** 예.

○**법무부차관 이진수** 이 이야기는 검찰청 소속 A 검사의 직무를 다른 검사로 하여금 담당하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컨대 보이스피싱 합수단, 남부의 금융전문청……

○**박균택 위원** 그러니까 중앙지검에서 일어나는 일을 부산지검에서 하게 한다든가 창원산단 그 사건, 창원이 하는 것이 부실하니 중앙지검에서 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는 규정을 얘기합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그냥 공소청을 총괄하는 지위에서 직무상의 명령을 발동하는 것이지 내 권한을 때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전·승계는 나의 권한을 하급자에게 넘겨주는 위임의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시는 사례는 전국 청에 흩어져 있는 일들을 효율적으로 하게 하기 위해서 지휘권을 발동하는 경우인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지휘권을 자기가 발동하는 것이라 직무의 이전·승계와는 무관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연혁적으로 이전·승계라는 용어를 쓰게 된 것이 아시다시피 검사가 단독 관청이기 때문에 그 사건 수사에 관해서 그 단독 관청인 검사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가 담당하는 직무의 일부 내지는 그 사건 관련된 부분들이 보통 대부분일 텐데요, 그 사건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전받도록 하거나 아니면 다른 검사로 하여금 승계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으로 과거부터 검찰청법의 근거 조항이었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하는 개념은, 여기서 말하는 이전·승계는 같은 청 내에서 부를 바꾼다든가 담당 검사를 바꾸는 의미의 권한 행사가 직무의 이전권인 것이고 청을 벗어나는 관할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총장의 지휘권에 기해서 담당 청을 정해 주는 그런 권한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전·승계와는 좀 다른 경우가 아닐까. 청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청 간의 이동 문제는 좀 다른 경우가 아니겠냐, 이것은 검찰총장의 지휘권으로 해결 가능한 것 아니냐 이 생각이 드는데 아닙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공소청에서 기본적으로 지휘·감독이 검사사무에 관한 지휘·감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소속 청의 장이 소속 직원들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검사사무에 관해서 지휘·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지휘·감독이라 하는 부분이 검사업무와 관련해서 업무적인 명령이나 지시를 내릴 수 있다는 근거인데요, 그 업무를 해당 소속 청이나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옮길 수 있는 권한에 대한 별도의 조항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청 안에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만 청을 다르게 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요. 사례를 언급하셨듯이 보이스피싱 합수단이나 재정범죄 합수단, 남부 금융전문청에서 전국에 있는 자본시장법 사건들을 몰아서 수사를 한다는 것도 근거가 될 수 있고요. 이 규정이 없을 경우에, 예컨대 A라는 청의 지방공소청장이 해당 소속 검사가 여러 비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계속해서 담당하게 할 경우에 검찰총장이 그 A라는 검사가 담당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적절하지 않으니 B 검사가 담당하도록 그와 같은 지휘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서영교 위원 그것은 수사할 때 애기고, 수사랑 상관없잖아요.

○소위원장 김용민 맞아요. 이제 수사 안 하잖아요. 그런데 검사가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보이스피싱 사건 수사를 대대적으로 해요. 좋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대대적으로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까? 검사는 1명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나중에 기소할 때 1명만 기소 여부 결정하는 것 아닌가요? 대대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아닌 것 같은데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보이스피싱 합수단 같은 경우에도 직접수사는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수사 관련된 기소와 공소유지 등 사건 파악과 기소 여부 결정, 공소유지를 위해서 지금 전문성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고요.

○소위원장 김용민 그것은 중수청에 전문성을 부여하면 되는 것이고 중수청의 전문성을 키워 가겠다고 하는데 검사가 왜 꼭 이렇게 직무 위임·이전·승계를 해서 대대적으로가 있어야 되냐는 것이지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합수단이나 이런 것들이랑 앞으로 공소청이 만들어져서 검사의 역할은 판이하게 다를 것이라 지금 기준으로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37조에도 각급 공소청의 장에게 처리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해당 공소청에서 해결하면 됩니다.

이 정도로 토론하시고, 더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곽규택 위원 그다음에 아까 징계 부분은 뭐지요?

○소위원장 김용민 45조, 징계 부분 토론하실 부분 있으면 말씀하시지요.

○곽규택 위원 45조에 대한 차관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좀 알고 싶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45조 관련해서는 먼저 조문 제목이 ‘검사의 징계 등’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문 표제를 ‘신분보장과 징계’로, 그와 같은 취지로 수정하는 것이 조문 내용상 더 바람직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정부안에서는 ‘징계처분 등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적격심사 등에 의하지 않고서는 해임·면직 등을 받지 아니한다’ 등의 조문 형태로 해서 절차와 함께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그 외에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형태의 조문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조문 구조의 형태가 검사의 신분보장과 징계 절차를 명확히 하는 조문 구조라고 생각을 해서 정부안에서 그와 같은 입법 구조 형태를 취했던 것이고요. 이것이 다른 해석의 여지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문 형태만은 원안대로의 조문 형태를 가져가는 것이 조금 더 완결성을 높이는 입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조문의 제목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뭐라고 그랬지요? 감사의.....

○법무부차관 이진수 '신분보장과 징계'였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예,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그것은 그렇게 정리해 주시지요.

○박은정 위원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요? 신분보장 규정을 조문 제목으로, 내용이.....

○소위원장 김용민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은 아마 실무상 고쳐 오지 않은 것으로 보여져서 이것은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지적하신 게.....

○법무부차관 이진수 규정 형식에 관한 것이요 '뭐뭐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어떠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구조였는데요 이것이 적극적 규정, '무엇무엇으로 인해서 처분을 받는다'라고 변경되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수정할 수 있다는 건가요? 혹시 준비해 보셨나요?

○김기표 위원 45조가 좀 비문이네.

○곽규택 위원 예, 약간 문장이 이상해요.

○김기표 위원 비문이야. 저건 고쳐야 되겠어.

○법무부차관 이진수 수정안의 구체적인 조문안을 말씀드리면 '검사는 탄핵결정,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고 징계처분, 적격심사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서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김기표 위원 그러면 되겠네요.

○곽규택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서영교 위원 원래 정부안이네, 그 전 정부안.

○소위원장 김용민 그리고 2항에 '검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이것은 기존 정부안의 표현이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큰 이견 없으시면 1항은 기존 정부안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또 토론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곽규택 위원 차관님, 또 의견 제시할 부분 있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아닙니다. 이 장에서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곽규택 위원 이 장에서 다른 사항은 없고.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다음 6장 공소청 직원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는 조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토론하실 게 없으면 7장으로, 7장도 조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넘어가서 사법경찰관리 등과의 관계.....

○법무부차관 이진수 위원장님, 54조 관련해서, 공소청 직원에 관한 규정인데요.

○소위원장 김용민 잠깐만요. 의견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공소청 직원에 관한 규정인데요 이것은 공소청 직원의 구체적인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전체적으로 위임하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경찰이나 공수처 등 다른 형사사법기관들도 직원 직무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권 행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통제 차원에서라도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사무 정도는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혹시 구체적인 조문을 염두에 두신 게 있으신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기존 정부안 관련해서 일부 조항에 해당하는데요, 그 부분은 의견을 추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예, 그렇게 하시지요.

차관님이 지금 말씀하신 저 부분도 일용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데 위원님들 그 안을 보고 나중에 정리할까요?

○**곽규택 위원** 그러시고.

지금 이게 사실 원래 현행 검찰청법에는 굉장히 상세한 규정들을 두고 있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한 조항으로 정리하는 게 맞나 싶기는 한데……

○**소위원장 김용민** 지금 혹시 조문이 준비되셨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기존 정부안 55조 제1항의 규정인데요 ‘공소청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종사한다. 1. 검사의 명을 받은 검사 직무에 관한 사무, 2. 형사기록의 작성과 보존, 3.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자로 지정을 받은 검사의 소송 업무 보좌 및 이에 관한 기록,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존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공소청의 행정에 관한 사무’,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저 사무를 나열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규정을 두자라는 취지이신 거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것은 한번 토론을 더 해 보고요.

○**곽규택 위원** 이것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예, 하십시오.

○**곽규택 위원** 차관님, 지금 현행 검찰청법에 보면 검찰청 직원의 보직이라 해 가지고 원래는 법무부장관이 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검찰총장이나 각급 검찰청 검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조항이 검찰청법에는 있는데 지금 이 공소청법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급 공소청 직원에 대한 보직은 누가 행하는 걸로 하는 건가요? 그러면 이것은 법에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이게 원래 검찰청법에 법무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어서 위임해 가지고 지금 실제로 하고 있을 겁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곽규택 위원** 하고 있는데 그 조항이 없어져 버리면 당연히 공소청의 직원은 그냥 각급 공소청장이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

을 조금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박은정 위원 이건 사무에 관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인사에 관한 것 아닙니까?

○곽규택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데 그 조항이 지금 원래 검찰청법에는 굉장히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 통째로 빠져 있어 가지고……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 점에 대해서 원래 정부안에는 56조 1항과 2항에 규정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와 같이 수정 작업을 거치면서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곽규택 위원 이것은 규정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조직법의 성격상.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토론은 의견 충분히 말씀하신 것으로 하고, 7장으로 일단 넘어가 볼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협력관계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따로 없으시면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8장 항고 및 재항고도 기존과 거의 유사한 조항들입니다. 이건 넘어가고.

9장 보칙 이 부분도 특별히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0장 벌칙, 정치 관여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법무부차관 이진수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곽규택 위원 지금 벌칙, 이 정치 관여죄라고 하는 것은 신설되는 처벌 조항 아닙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런데 지금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히 검사도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데 국가공무원법이나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 당연히 검사가 선거라든지 정치활동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어겼을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되고 형사처벌 조항도 다 가능한데 지금 법을 만들면서 정치 관여죄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굉장히 불명확한 규정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소위원장 김용민 51조 1호에 그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51조(정치운동 등의 금지) 규정에.

○소위원장 김용민 아까 제가 여기에 상세하게 있다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박균택 위원 정말 너무 많네요, 너무 상세한데.

○곽규택 위원 공소청법에 이런 걸 규정하는 게 맞습니까?

○소위원장 김용민 이게 기존 검찰이 정치검찰로 오명이 찍어진 그런 반성적 고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곽규택 위원 행정공무원들이 정치행위는 더 합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다 처벌해야지요.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위원장님, 57조 조문인데요. 57조의 공소청, 지금의 대공소청 사무를 법무부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15조 공소청 직제를 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내용과

맞지 않아서 보칙 전체는 삭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보칙 전체를 삭제요?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예.

○곽규택 위원 뭐하고 맞지 않는다고요?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15조 공소청에 대한 직제를 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부분과 맞지 않아서 전체 삭제해도 괜찮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이 부분은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지요?

그러면……

○박균택 위원 이걸 그게 아니고 집행규칙이라든가 매우 실무적인 내용들을 규정한 것일 것 같은데요. 용어를 바꿔서라도, 직제에 대해서는 그렇고 직제 외라는 말을 써서라도…… 이게 지금 사건사무규칙, 집행직무규칙 그런 아주 실무적인 조항의 근거를 설명하는 것인 것 같은데.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행정입법에서 집행을 위한 집행명령은 위임이 없어도 가능한 거라서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아니, 그런데 이 부분은 조직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는 것과, 지금 57조(위임규정) 같은 경우에는 박균택 위원님께서 설명하셨듯이 검찰사무규칙과 검찰압수물처리규칙, 기타 등등 형사절차에 관한 부분들을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법무부령에 근거를 두고 각종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크게 정합성에 문제도 생기지 않고 한다면 57조의 규정은 그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예, 위원님들이 두자는 의견들이 있으니까 두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예, 두시지요.

○박균택 위원 이 규칙이 내부 규칙을 넘어서 사건 당사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는 사항들이 좀 있어서 아마 법에 남긴 걸 겁니다.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이것은 저희가 공소청 그리고 각급 공소청 위당을 정리하면서 명확히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속기록에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 충분히 남았을 것 같으니까요.

그러면 부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칙에서 특징적인 게 5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6조 3항에서 기존 사건이 끝나지 않았을 때 90일 이내에 해당 사건을 종결하게 하고 신건은 못 하게 하는 그런 규정이 특징적이고요.

그다음에 7조가 조직 폐지 및 신설 등에 따른 검사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들에 관한 경과조치로 현재 검찰청의 검사와 수사관 그리고 직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 입장 한번 들어 볼까요?

부칙에 대해서 종합적인 의견 주십시오.

○법무부차관 이진수 첫 번째로 제5조 관련해서 조직 폐지 및 신설에 관한 소관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를 기존 6개월에서 90일로 줄이셨는데요. 이 부분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실 사항입니다만 6개월로 두었던 이유는 수사 중이었던 사건에 대한 사건 처리와 완

결정 있는 사건 처리를 도모한다는 의미에서 그와 같이 6개월을 두었던 것이고요. 그 공간에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하게 된 경우에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새로 파악해서 시작하게 되면 사건 처리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조직 폐지 및 신설 등에 관해서 경과조치 부분인데요. 기존의 정부안에서는 기본적으로 정부조직 개편 시에 검사가 특정직이라는 부분과 검찰수사관들에 대한 전직 관련된 일반적인 법원리에 따라서 기존의 검사와 검찰청 직원들을 공소청에서 승계하도록 하고 검사와 검찰청 수사관이 전직을 희망할 경우에 중수청으로 옮겨 가는 구조로 해서 공소청 부칙과 중수청 부칙을 규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정안을 저희가 깊이 검토하기에는 시간이 좀 짧았는데요. 이와 같이 규정하게 될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기존의 검찰청 검사와 수사관이 공소청에 근무하지 않고 중수청으로 전직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서 이런 경우에는 특정직공무원인 검사의 경우에도 법률상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검찰수사관의 경우에도 임용권자가 다른, 즉 법무부에서 행안부로 옮겨 가는데 이와 같이 의사에 반해서 전직할 수 있는 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추가로 검토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의견을 언제 주실 수 있나요?

○나경원 위원 이 부칙 7조는요 사실 이것 완전히 강제 발령권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권자가 법무부장관과 행정부장관, 다른데요. 이렇게 함부로 막 바뀌도 됩니까?

그리고 검사라는 지위와 또 수사관이라는 것이 지위가 같은 다르든 불문하고 본인에게 선택권을 줘야지 이런 식으로 강제 발령 내는 것은 이걸 진짜 나는…… 이렇게 법을 만들어도 됩니까? 자신들이 남아 있는, 검찰청이 승계되는 조직은 한마디로 공소청 아니에요? 그렇지요? 검찰청이 뭘로 된 겁니까? 공소청으로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소청에서 새로 생기는 중수청로 마음대로 발령 내겠다? 이것은 뭐……

○곽규택 위원 조항 자체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나경원 위원 이것은 거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 같은데요. 전혀 다른 직군이라고 보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 행정조직이 폐지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공무원이 직권면직 되는 게 기본인데요. 그런데 지금 공소청의 조직법이, 그러니까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기는 하지만 검찰청의 업무가 기본적으로 공소청에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어서 검찰청 안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대로 승계되는 것은 이 조직법상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를 할 것인가 아니면 검찰청에 있는 검사와 공무원들, 직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저는 정부에서, 국회에서 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아마 정부안이 처음에는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렇게 승계를 하게 되면 검찰청 안에 있는 수사인력이 그대로 남게 되는, 검찰청은 이미 수사권이 폐지가 됐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칙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까 이 부칙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정부에서 입장을 빨리 내놓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야 국회에서

심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정리가 된 것이 지금 법무부차관이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검토를 해 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규정을 할 것인가, 검찰청 공무원을 그대로 공소청으로 보내는 것은 맞지가 않은 게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거거든요. 빨리 안을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범정부검찰개혁추진단에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고 검토가 되었던 사안이었고요. 이것이 지금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그다음에 행정법적인 원리와 그다음에 이렇게 강제로 보냈을 때에 야기될 수 있는 소송 등을 다 감안해서 기존의 정부안과 같이 공소청법안의 부칙과 중수청법안의 부칙을 마련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와 수사관들의 상당수가 중수청으로 가서 출범부터 원활히 업무가 진행되어야 된다는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인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면직을 하고 강제로 보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률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어떤 법률적 문제가 있습니까?

○**박은정 위원** 소송이나 뭐 이런 문제가……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니까요, 어떤 법률적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나경원 위원** 법적 문제가 있지요, 헌법적 문제. 직업선택의 자유를……

○**소위원장 김용민** 제가 질문했잖아요. 답하시겠지요.

○**나경원 위원** 말이 안 되는 법을 하니까.

○**소위원장 김용민** 왜 위원님이 법무부차관처럼 답을 하십니까.

○**나경원 위원** 내가 법무부차관 대리입니다.

(웃음소리)

○**박은정 위원** 왜 이렇게 의견이 같으세요?

○**나경원 위원** 나는 검사 출신도 아닌데, 왜 검사 출신들 다 있을 때 잘하시지.

○**소위원장 김용민** 지금 저희가 법률을 만들고 있는데 어떤 법률의 문제가 있다는 건지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차관님, 또 한편으로 기존 정부안대로 하면 공소청 직원으로 다 보는 것으로 간주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중에서 중수청으로 가고 싶은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나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본인이 중수청으로 전직을 희망한다고 할 경우에는 제가 절차 부분을 정확히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만 절차상으로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면직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행안부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형태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냥 채용이 아니라 채용시험을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 절차에 관해서는……

○**소위원장 김용민** 그래서 중수청 수사관으로도 채용시험 없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간주 규정을 넣어 주는 거거든요. 오히려 공소청,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검찰청 검사나 수사관이 선택할 수 있는 구조인 거잖아요. 검사로도 보고 중수청 수사관으로도 보니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오히려 이게 열어 주는 방식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은정 위원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해 놔 가지고……

○박균택 위원 이게 말씀이지요, 대통령께서 평소 하시던 말씀이 이 검찰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수사력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 떨어뜨리려는 계획이 돼서는 안 된다고 늘 말씀하는 분이었는데, 이 얘기도 어떤 검사가 정말 수사를 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중수청으로 이동을 해서 수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의미인 것이지 강제로 저쪽으로 전직을 시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다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전직한다는 단서를 달아 준다는 거라면……

○나경원 위원 그런 거라도 넣어 줘야 되겠지요.

○박은정 위원 대통령령으로 지금 위임을 해 놔놓았어요, 그런 부분들.

○박균택 위원 그래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한다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임용이 되는 경우라고 달아 주는 방법은 어떨지. 그런데 이게 오해할 일이 아니고 실제 그런 일을 하게끔 보장해 주겠다는 선의로 하신 말씀으로 알고 있거든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거기에서 검찰청 수사관이 많이 전직해야 한다는 부분을 감안해서 중수청법 부칙 4조 등에 의하면 희망에 따라 이것은 중수청 수사관의 채용절차에 관한 부분인 것이고요. 그것을 검찰수사관이 희망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규정과 같이 정부안은 마련되어 있었는데 이와 같이 수정이 되다 보니까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공소청 또는 중수청으로 배치할 수 있다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니까 그게 어떤 문제가 있냐고요.

○나경원 위원 이걸 직업선택의 자유……

○소위원장 김용민 그래서 질문하는 거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나경원 위원 수사관으로 본다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정부조직 개편 등에 있어서 A 부처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서 면직 한 다음에 재임용하는 절차 등과 관련해서 일방적으로 정부가 면직을 하고 재임용하는 것이 내부의 일정한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면직과 재임용이 되어야 되고……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니까 그게 어느 법에 있냐고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게 행정소송과 관련된 여러 가지 판결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70조에는 직권면직 하도록 돼 있잖아요. 조직이 개편되는 경우에는 직권면직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정원이 줄거나 할 때는 직권면직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 규정을 법에서 명확히 정해 놔고 지금 저희가 논의하는 것도 법이에요. 저희가 지금 시행령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꾸 법률을 위반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을 하시는 거고 차라리 나경원 위원님처럼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면 저희가 그래도 고민을 더 해 보겠는데 법률을 위반한다라고 자꾸 주장하시니까 지금 이게 안 맞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법률조차도 부칙으로 개폐가 가능한데, 개정이 가능한데

왜 자꾸 법률을 얘기하시나 싶어서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그것 한번 조금 더 검토해 보시고요.

○**박은정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법안심사자료 93페이지에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검찰청에 있는 수사사무에 종사하는 검찰공무원은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일단은 수사기관으로 조직을 이관하는 것으로 그리고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이렇게는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사사무를 담당하는 검찰청 수사관은 수사청으로 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수사사무가 없어지니까. 그리고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일단은 이전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그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참조해 가지고 이렇게 해도 이미 지금 이 정부안, 올라온 심사자료에, 대통령령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면 저는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소위원장 김용민** 그래서 부칙 부분은 그 취지와 관련해서 아마 문구 정리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일단 전체를 한번 다……

○**김기표 위원** 그리고 부칙 7조에 보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소속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 임기가 정해졌든지 이런 것은, 그러니까 직업공무원제, 평생공무원제 때문에 이런 보장기준 같은 걸 두는 거거든요. 그러면 임기제, 임기가 정해진 검사는 제외해도 특별히 불이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총장으로 할 게 아니고 ‘임기가 정해진 검사는 제외한다’ 이렇게 바꿀 것을 권합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그건 합리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보지요.

그러면 법안 전반에 대한 토론은 마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해야겠지요?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하지요, 법무부도?

그러면 정회를 했다가 이게 딱 저녁 시간이 걸려 있어서…… 그 부분 정리하는 데 얼마나 시간 걸리시겠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한 20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렇게 빠르게요?

그러면 일단 6시 반에 속개하는 걸로 하고 그동안 준비를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회의중지)

(18시51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용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토론을 하면서 저희가 수석전문위원님께 문구 같은 것들을 좀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21조(사건심의위원회)와 관련된 규정 그리고 54조(공소청 직원)과 관련된 규정들을 아까 회의 과정에서, 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들을 저희가 수정한

것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말씀 한번 주시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공소청법안 조문대비표 보시면 아까 심의하셨던 교섭단체안에서 21조 위원장 선출 방법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말씀하셔서 위원장을 지금 200명 풀 안에서 호선하는 게 아니라 제6항에 보시면 회의 때마다 15명으로 무작위 추천하는데요 그때 호선하는 것으로 바꾸면서 앞의 조문들을 정리했습니다.

2항 같은 경우, 위원장이 뒤에 나오니까 2항에서 ‘위원장’ 뺍니다. 위원장 빼고 심의위원회는 50명 이상 200명 이하로 광역공소청장이 위촉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임기 조항은 별도 조문으로, 성격이 달라서 3항으로 뺐었고요. 내용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5항에다가, 위원장 빼고요 심의위원회 회의는 회의 시마다 무작위 추천을 통해서 선정하는 15명으로 구성하고요.

6항에서 위원장이 나옵니다. 제5항에 따라 구성된 심의위원회 회의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다음에 의결정족수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항은 같습니다.

또 54조(공소청 직원)에 대해서 사무를 정부안처럼 열거하자고 말씀하셔서 55조에 정부안처럼 직원을 열거하면서 54조 교섭단체안에서 대령으로 위임한 조항을 55조 2항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소청 직원의 구체적인 사무는 대령으로 위임한다’, 조문을 이동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 일단 처음 만들어 온 정부안을 보면 이게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법무부령으로 되어 있거든요. 공소청 직원의 일반사무를 대통령령까지로 올려야 되는지가 좀……

○김기표 위원 원래 정부안은 법무부령이었어요?

○박은정 위원 원래 정부안은 법무부령으로 되어 있고.

○김기표 위원 정부안으로 돌아가는 취지면 정부안으로 원래대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박은정 위원 그렇지요? 공소청 직원의 사무라서……

○김기표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55조 2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로 논의하신 것이지요?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예.

○김기표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김용민 또 다른 부분 토론하실 게 있을까요?

이성윤 위원님.

○이성윤 위원 법안 2조와 관련된 것인데요. 2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소청은 검사의 사무를 총괄한다’. 2항, ‘공소청은 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3조에 보면 대법원에 상응하는 공소청 또 고등법원에 상응하는 광역공소청, 지방공소

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1조에 보면 기존의 대공소청에서 공소청으로 바꾸면서 거기에 검찰총장을 두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조 2항에 11조의 공소청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미상관되는 법률 조항을 생각한다면 2조를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검사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을 둔다’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 3조도 통일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소위원장 김용민 2조의 1항과 2항을 합쳐서 하자는 말씀이지요?

○이성윤 위원 예, 합쳐 가지고 ‘검사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을 둔다’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합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계속 말씀 주시겠습니까?

○이성윤 위원 그리고 3조 3항에 나온 것처럼 공소청의 위치와 그 외 공소청, 각급 공소청으로 하고요.

○김기표 위원 3조 3항이요?

○이성윤 위원 예, 그대로 하고.

○김기표 위원 그러면 되겠네요.

○이성윤 위원 10조에 보면 ‘공소청의 공무원은 공소청의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서로 도와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공소청 및 각급 공소청의 공무원은 그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서로 도와야 한다’ 이렇게 고치면 어떨까 합니다.

○김기표 위원 좋은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또 더 있으신가요?

○김기표 위원 11조?

○소위원장 김용민 11조 2항은 아까 저희가 수정을 했습니다.

○이성윤 위원 ‘검찰총장은 공소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사사무를 총괄하며 공소청 및 각급 공소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이렇게 고치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렇게 했었지요.

○이성윤 위원 나머지는 아까 논의된 대로 고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잠깐……

○소위원장 김용민 다른 위원님.

○서영교 위원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것을 보다 보니 이게 공소청법안이잖아요.

○이성윤 위원 예.

○서영교 위원 그래서 공소청……

○소위원장 김용민 위원님, 상호 간 토론보다는 정부 관계자를 상대로 토론해 주시면……

○서영교 위원 지금 검사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을 둔다. 그러면 이 공소청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기존의 정부 법안으로 본다면 대공소청을 대신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위에 공소청법안이잖아요. 그래서 이 공소청은 전체를 다 말하는 법안이잖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공소청이라고 하는 용어와 조금 또 달라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1조에 공소청의 조직, 직무 범위, 인사, 공소청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이렇게 되다 보니 또 위에서부터 손을 다시 한번 더 보든지 그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님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해석상 문제는 없지 않을까요?

○서영교 위원 예.

○소위원장 김용민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기표 위원 이게 좀 충분히 논의가 되면 좋은데, 이런 개념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1조(목적)도 ‘공소청 및 각급 공소청의 조직’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죄송합니다. 약칭을 위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약칭은 위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약칭은 아래로 향합니다.

○이성윤 위원 아, 그렇구나.

○서영교 위원 약칭을 위로 올릴 수 없다니요?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이하 각급 공소청’이라 하기 때문에 조문 밑으로, 그 약칭한 조문 밑으로만 약칭을 쓸 수 있어서요.

○김기표 위원 제대로 써야지요, 약칭이 밑에 있으니까, 이 3조 3항에 있으니까.

○이성윤 위원 그러면 ‘이 법은 검사의 조직’, 공소청 내의 검사로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김용민 제가 볼 때는 해석상 하등의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박은정 위원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소위원장 김용민 그리고 법무부는 지금 부칙 7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항에 따른 우려사항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검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검찰청법 그다음에 검사징계법상 신분보장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징계면직이나 의원면직 외에 직권면직은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고요. 헌법상 공무담임권과 헌법상 검사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수사관 관련해서는 말씀하셨다시피 국가공무원법 70조 1항에 직제와 정원 개폐가 있을 때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같은 조 3항을 보시면 이와 같이 면직을 시킬 때는 임용 형태, 업무 실적, 직무수행 능력,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해서 면직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판례상으로는 이와 같은 면직 규모와 대상을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고, 또한 이런 면직 기준을 설정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적합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면직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고 구제 조치까지 충분히 되어야 한다는 부분을 판례상 명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기준 설정도 굉장히 어려울뿐더러 그 기준에 맞지 않게 될 경우에는 개별 공무원들의 신분보장을 침해하게 되고 그로 인한 쟁송도 우려되기 때문에 정부안과 같은 부칙을 마련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대안으로 마련했던 부분들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7조 1항의 대안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에 종전 검찰청 소속 검사는 공소청 검사로, 검찰청 소속 직원은 공소청 소속 직원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중대범죄

수사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중대범죄수사청법 제17조 및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라 이 법 시행일에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등의 대안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 대안 혹시 배포 가능하신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바로 출력해서 배포 가능합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그사이에 법원행정처 차장님, 지금 판사의 신분보장은 헌법상 보장입니까, 법률상 보장입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헌법상 보장되는 부분도 있고 법률상 보장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런데 대부분 헌법상 보장이지요. 106조에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퇴직 규정도 106조 2항에 있어요.

이 신분보장 규정을 검사는 헌법상 신분보장을 받으니까, 법률상 받으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검사의 신분보장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헌법에 검사의 신분보장 규정 본 적 있으신가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기억나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없지요, 없습니다. 대신에 검찰청법에 유사한 조항을 넣어 놓았잖아요, 지금 저희 공소청법에도 논의하는 것처럼.

그래서 검사의 신분보장은 법률상 신분보장인 것이고 판사의 신분보장은 헌법상 신분보장입니다. 완전히 다른데 검사의 신분보장을 마치 헌법상 신분보장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거나 오해가 될 만한 주장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해 보이는 것 같고, 판사를 이렇게 헌법에 굳이 신분보장을 넣은 이유와 검사를 헌법에 굳이 신분보장을 넣지 않은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고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기 때문에 행정부의 법률에 의해서 행정각부가 개폐가 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법률에 따라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취지 아닌가요? 차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래서 지금 법무부차관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도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법률상 보장과 헌법상 보장은 또 다른 문제니 적어도 여기에서는 좀 열어 놓고 얘기를 해야 되고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게 결국에는 같은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검찰청의 검사와 수사관이 어떻게—물론 당사자의 희망이 제일 존중돼야 됩니다—원활하게 각각의 기관으로 잘 배치가 되고, 희망이 제일 우선이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은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의 빈 공간이 생기지 않게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이것은 사실 국가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영역이 같이 이 법 부칙에 잘 녹아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부칙에 접근을 하자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런 내용들이 부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다듬을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 동의를 해 주시면, 지금 부칙 7조에 대한 규정은 법무부가 조금 더 안을 다듬을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 다듬을 때 아까 김기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 같은데 1항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소속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 이 괄호 부분을 ‘임기가 있는 검사는 제외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문구를 정리해 주실 때. 부칙을 정리하실 때 ‘임기가 있는 검사는 제외한다’라는 표현을 살려 주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법무부차관 이진수** 임기 있는 검사 중에서는 검찰총장 외에도 대검의 감찰부장 등도 임기가 있는 걸로 돼 있는데요.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니까요. ‘임기가 있는 검사는 제외한다’라고 하는 게 그 취지상 명확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은 법무부가 안을 마련할 때까지, 일단 오늘 소위는 기존 정부안을 기준으로 처리를 하되 법무부가 안을 마련해 오면 내일 전체회의 때 그 법무부안을 기준으로 수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동의해 주셨고, 법무부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아까 말씀드린 제 취지를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자꾸 오해하시는데, 검사에 대한 보복이다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국가 범죄 대응 역량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중수청도 만들면서 이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고려해서 두 가지가 충돌하지 않고 잘 조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부칙 7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정부안으로 가되 대신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괄호 안에 ‘검찰총장은 제외한다’를 ‘임기가 있는 검사는 제외한다’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동의해 주시지요. 그러면 이것은 정리됐고.

아까 말씀 주셨던 2조와 10조는 이성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지요, 위원님들?

○**김기표 위원** 예,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11조 마찬가지로 아까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정리하신 21조와 공소청 직원인 54조·55조는 방금 논의한 대로 하되 55조 2항의 대통령령을 법무부령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요?

잠깐만요. 저희가 지금 더 말씀드려야 될 것은 없지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토론하면서 수정을 언급하고 얘기했던 게 45조(검사의 징계 등)와 관련된 규정은 정부안대로 1항은 가고 2항에 ‘검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맞지요?

○**김기표 위원** 원래 정부안으로 가는 거네요?

○**소위원장 김용민** 예, 그래서 1항은 정부안대로 가고 2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54조·55조는 아까 말씀드렸고, 57조(위임규정)도 그대로 두기로

했고, 부칙 6조에서 6개월을 90일로 수정하는 것도 그대로 90일 수정으로 이렇게 가기로 했지요.

그러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성윤 위원** 잠깐만요. 법률 명칭 관련해서 공소청법안으로 돼 있는데 공소청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이렇게 고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좀 더 깔끔해질 것 같은데.

○**소위원장 김용민** 꼭 고쳐야 됩니까?

○**김기표 위원** 법안 이름을요?

○**이성윤 위원** 예, 법률 이름을.

○**박은정 위원** 공소청 뭐라고요?

○**이성윤 위원** 공소청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박은정 위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기표 위원** 괜찮은 것 같은데요. 법명 바꿀 수 있나요?

○**이성윤 위원** 지금 현재는 우리가 대검찰청만 해당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치면 어떨까요.

○**박은정 위원** 맞습니다. ‘공소청 등’에 각급 공소청이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렇게 하면 공소청 등에 대한 정의 규정이 바로 나와야 되지 않아요?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등’으로 해서 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을 포섭하시려 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 저희가 목적부터 다 열거하는 식으로 조문을 세세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조에도 ‘공소청의 조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공소청 등의 조직’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윤 위원** 일단 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박은정 위원** 그것은 체계·자구 심사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기표 위원** 그렇지요. 그 정도로 해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변경이 된다면. 1조에서 ‘공소청 등’으로 하고 그다음에 3조 3항에서 ‘각 급 공소청’의 약어를 따잖아요. 그렇게 하면 별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체계상으로.

○**소위원장 김용민** 차관님, 어떻습니까? 기존에 검찰청법 해서 공소청법 이렇게 온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공소청법안으로 가시는 게, 저는 법제명 관련해서는 공소청법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검찰제도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설치된 것이 공소청법안이기 때문에 그냥 공소청법안으로 가져가는 것이 다른,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예정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기구를 신설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법제명을 두어 왔습니다만 지금 기존에 우리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핵심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공소청법안같이 법제명을 간략하게 달고 있는 것이 다른 법률에서도 기본적인 제명의 원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중수청도 중대범죄수사청법이라고 되어 있는 거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예.

○소위원장 김용민 설치법이라고는 안 되어 있지요? 그러면 그대로 통일해서, 취지는 매우 중요한……

○이성윤 위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작년 정부조직법 개정할 때 이미 공소청법으로 해 났기 때문에 그 법에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렇게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행안위에서 제명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래요?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예,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행안위에서 제명이 바뀌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소위 단계에서?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예.

○김기표 위원 그런데 저번에 정부조직법에서는 중수청법이라고 안 했어요?

○소위원장 김용민 중대범죄수사청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겠지요.

○이성윤 위원 상관없다고 그러니까.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오늘 소위는 공소청으로 일단 가고요. 그 문제도 내일 전체 회의에서 중수청과 같이 맞춰 가고, 그다음에 정부도 다시 한번 그 입장을 정리해 주십시오. 지금 이성윤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시는 그 취지는 이해하시잖아요, 차관님?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이해합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래서 그 관점에서 제명을 고치지 않고도 정리가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아마 제명을 지금 고치고 싶지 않으신 것 같으니까 고치지 않아도 정리가 잘 되는지, 도저히 정리가 안 되면 제명 고치는 것까지도 저희가 내일 전체회의에서 더 논의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위원님들께서 방향성을 어느 정도는 잡으신 것 같아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는 송구스럽습니다만 공소청법안이라고 하는 청의 기관에 관해서 기본적인 정의 규정이 있어야 되고 그 기관이 어떻게 구성되느냐라는 조직 구성이 또 설시가 돼야 될 텐데요.

이렇게 되면 처음에 말씀드렸다고 공소청이라고 하는 기관과 공소청을 구성하고 있는, 지금 어쨌든 3단계 구조이지 않습니까? 지방공소청, 광역공소청, 기존의 대공소청. 이 용어가 법조문의 규정 형식과 더불어 혼재되는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점은 꼭 좀, 저희도 추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상당히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기표 위원 사실 대검찰청법 해도 되는 거니까요. 공소청법으로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법명인데요 뭐.

○박은정 위원 그래서 아까 이성윤 위원님이 정리를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일단 논의한 것처럼 공소청법을 제명으로 그대로 해서 오늘 통과하고요.

내일 전체회의 때, 혹시 진짜 또 수정 필요성이 있으시면 내일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저희 또 내부적으로 더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5건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6항 공소청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공소청법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법안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공소청법안의 구체적인 법문과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차관님, 기우중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5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곽규택 김기표 김용민 나경원 박균택 박은정 서영교 이성윤 조배숙

○출장 위원(1인)

장경태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법무부

차관 이진수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차장 기우중